

1930년 전후 합법적 정치 운동의 퇴조와 신간회를 둘러싼 민족주의 세력의 동향

윤덕영*

〈차 례〉

1. 머리말
2. 식민지 조선의 지방제도 개정과 일본 중의원 제2차 보통선거
3. 합법정치를 둘러싼 민족주의 세력의 동향과 분화
4.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의 목적은 1930년 전후, 최린의 천도교 신파와 연결된 타협적 자치운동이 기독교계의 수양동우회와 기독교신우회, 동아일보 등의 민족주의 세력뿐만 아니라 신간회의 지도부도 포함하여 민족운동 세력내부에 광범하게 전개되었다는 주장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신하여 1930년 전후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정세 변화를 일본 제2차 중의원 보통선거와 식민지 조선의 제2차 지방제도 개정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천도교와 기독교계열, 동아일보 계열 등 민족주의세력의 실제 동향과 활동 양상, 신간회 김병로 중앙집행부의 조직 실상과 성격에 대해 해명하려는 것이다.

20세기 전반 동아시아는 제국의 시대였다. 1920년대 정당정치시대가 도래했음에도 일본 특권세력들과 군부세력, 정당정치 핵심세력들은 식민지에 중의원 참정권을 부여하거나 자치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1930년 일제의 식민지 지방제도 제2차 개정은 이런 제국과 식민지 상황을 반영한 결과였다. 지방제도 개정으로 만들어지는 극히 제한되고, 권한도 별로 없는 지방정치 공간은 지방정치 참여의 의미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1930년 2월 중의원 제2차 보통선거의 결과는 무산정당운동의 분열상만을 드러냈고, 일본사회의 민주적 변화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이런 상황은 식민지 조선에서 합법적 정치운동의 공간을 대단히 축소시켰고, 그 전망을 어둡게 하였다. 당시 민족운동세력들은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

1920년대 합법적 정치운동을 주도했던 동아일보계열은 일본 정계 변화 및 중국 국민혁

*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명의 전개에 주목하면서 그 정세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운동 노선과 방향을 수정하여 갔다. 그들은 중의원 제2차 보통선거의 결과와 식민지 지방제도 2차 개정을 통해 조선에서 자치의 회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판단했고, 합법적 정치 운동에서 사실상 후퇴했다. 반면에 천도교 신파는 정세와 무관하게 자치운동을 전개했다. 민족주의세력 내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력을 가졌던 천도교세력들은 민족협동전선운동에 비판적이었고, 독자 활동에 주력했다. 기독교신우회의 주요 인물들은 신간회에서 활동을 하였고, 천도교 신파와 연결되어 자치운동을 추진하지 않았다. 당시 기독교세력의 사회운동과 민족운동은 사회참여에 반대하는 기독교 보수 세력과의 갈등 속에 침체상태에 있었다.

신간회 허헌 중앙집행부나 민중대회사건이후 구성된 김병로 중앙집행부나 그 인적 구성과 조직 성격에 큰 차이가 없었다. 민족주의자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지만, 일부 사회주의자들도 적극 참여했다. 그들 중에는 좌익사민주의자라 불리는 인물들도 있었고, 당재건운동과 혁명적 농노조운동을 전개하던 인물들도 있었다. 이들 사이에는 합법적 정치운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 신간회의 활동내용에서도 이전과 달라진바가 크게 없었다.

[주제어] 합법적 정치운동, 자치운동, 보통선거, 신간회, 기독교신우회, 동아일보, 천도교, 김병로, 박희도, 송진우, 최린

1. 머리말

1930년 전후의 민족운동의 양상과 신간회 해소에 대한 연구들의 상당수는 몇 가지 입론에 기초하여 있다. 1929년 12월 민중대회사건이후 신간회 지도부는 급격하게 우경화되었고, 합법운동의 테두리에 머물러 있었으며 타협적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경향성은 당시 김병로 중심의 신간회 지도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근우회, 기독교계의 수양동우회와 기독교신우회, 동아일보, 물산장려회 등의 민족주의 세력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세력인 조선청년총동맹(이하 청총)의 집행부에게까지 광범하게 퍼져 있었다. 또한 이들 중 일부는 최린의 천도교 신파와 연결되어 있었으며, 결국 일제의 지원을 받는 타협적인 자치운동을 전개하려 했다는 것이다.¹⁾ 당시 관헌사료들이

1) 대표적으로 박찬승은 1929~32년 제3차 자치운동이 전개되었다면서 천도교 신파의 최린과 송진우 등 동아일보 간부가 자치운동의 주역으로 적극 활동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는 일제 관헌 기록에 근거해서 기독교의 수양동우회와 신우회도 최린 및 천도교신파의 자치운동과 맥을 통하고 있다고 정리했으며, 자치운동 관련 움직임이 신간회 김병로지도부 체제에 파급되어 합법주의로의 경사되

이들의 움직임은 자치운동으로 기술하였기 때문에 이런 입론은 거의 기정사실처럼 인식되었다. 이렇게 당시 타협적 자치운동이 민족운동 세력내부에 광범하게 전개되었고, 신간회의 지도부도 이에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우경화된 신간회의 해소는 불가피하다는 논의로 이어진다.

1930년 당시 신간회 지도부가 합법적 운동 경향을 보인 것, 또한 청총의 간부를 비롯해서 일군의 사회주의자들이 합법적 운동 경향성을 보인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²⁾ 그렇지만 이들의 합법운동을 중요시하는 운동 경향이 일제 총독부의 지원을 받는 타협적 자치운동과 연결되어 전개되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더 나아가서 당시 동아일보계열과 서북기독교세력의 수양동우회, 기독교 연합단체 신우회, 신간회 간부들이 참여한 광범한 자치운동이 실제 전개되었는가 하는 점도 의문 대상이다.

자치운동은 식민지 조선에 자치의회 설치를 주장하는 것인데, 이는 일제 조선 식민정책의 커다란 변화를 전제로 한다. 1920~30년대 일제의 조선 식민정책은 내지연장주의에 입각한 동화정책이었다. 자치정책은 이를 부정하고 식민통치 정책의 커다란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는 조선총독부가 결정하거나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고, 반드시 본국 정부와의 협의와 허가가 있어야 하는 사항이었다. 그렇지만 당시 일본 본국의 특권세력과 군부세력, 정당핵심세력들은 자치정책을 주장하거나, 실시하려 하지 않았다.³⁾ 조선총독부도 1920년대 내내 내지연장주의에 입각한 동화정책

게 되었으며, 청년총동맹까지 파괴되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그는 “제3차 자치운동에는 천도교 신파의 최린을 중심으로 하여 동아일보 간부, 수양동우회 일부 회원, 신우회의 일부 기독교세력, 신간회 일부 간부, 청년총동맹의 허일 일파 등 상당한 광범한 세력이 관련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박찬승, 『한국근대 정치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1992, 343~351쪽). 신간회에 대한 중요한 저작을 출간한 이균영도 김병로 지도부가 최린 일파가 주장하는 자치운동에 협력하는 합법운동을 주장했다는 일제 관련 자료를 인용하여, 신간회 본부가 천도교청년당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방향전환했으며, ‘온건화’ 되었다고 주장했다(이균영, 『신간회연구』, 역사비평사, 1993, 382~385쪽). 이후 오랫동안 많은 연구들이 이 논지를 별 의문 없이 그대로 따랐다.

- 2) 합법운동 동향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이애숙, 『1930년대 초 청년운동의 동향과 조선청년총동맹의 해소』, 한국역사연구회 근현대청년운동사 연구반 지음, 『한국근현대청년운동사』, 풀빛, 1995, 376~379쪽; 김형국, 『1929~1931년 사회운동론의 변화와 민족협동전선론』, 『국가관논총』 89, 2000, 270~281쪽.
- 3) 자세한 내용은 다음 참조, 윤덕영, 『1920년대 중반 일본 정계변화와 조선총독부 자치정책의 한계』,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7, 2010, 168~184쪽.

의 기초에 있었다.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1929년 사이토 마코토(齋藤實)가 조선총독으로 재차 부임하면서, 총독부 관료들을 동원하여 자치정책을 모색 하지만, 본국과의 협의가 여의치 않자 그 역시 금방 포기하고 만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총독부와 연계된 광범한 자치운동이 전개되었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는 가설이 된다. 총독부가 자치정책을 추진하지도 않았고, 자치운동세력을 지원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총독부내 하에누키 관료, 즉 토착 일본인 관료들 중 일부가 자치정책을 주장했으나, 정책으로 성립되거나 실시되지 못했다.

한편 당시 민족주의세력과 신간회 중앙집행부가 당시 국내의 정세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가, 그에 맞추어 어떻게 운동 방침을 정하고 어떻게 활동했는가 하는 부분도 제대로 해명되지 못했다. 또한 신간회 김병로 중앙집행부가 최린 및 천도교 신과 간부들과 접촉하려고 했던 실상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못하다. 단지 최린의 자치운동에 협력하려 했다는 주장이 있을 뿐이다.

최린과 천도교 신파들이 자치운동을 주장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동안 천도교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면서, 천도교세력 운동의 실상과 양상, 그들의 사상과 이념, 자치주장의 배경과 근거에 대해서 새로운 많은 해명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들의 민족협동전선에 대한 인식과 신간회에 대한 입장도 정리되었다.⁴⁾ 한편 기독교세력에 대한 연구도 진척되면서 기독교 민족운동의 실상과 전개양상, 기독교신우회 같은 협동전선운동에 대한 해명도 이루어졌다.⁵⁾ 또한 동아일보계열의 민족운동 양상과 전개과정에 대해서도 해명이 이루어졌다.⁶⁾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 성과에 기반하여 1930년 전후 민족주의세력의

4) 자세한 내용은 다음 참조. 조규태, 『천도교의 문화운동론과 문화운동』, 국학자료원, 2006; 김정인, 『천도교 근대 민족운동 연구』, 한울아카데미, 2009; 용서, 『일제하·해방후 천도교 세력의 정치운동』,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성주현, 『근대 신청년과 신문화운동』, 모시는 사람들, 2019.

5) 자세한 내용은 다음 참조. 장규식, 『일제하 한국 기독교민족주의 연구』, 혜안, 2001; 이현주, 『일제하 (수양)동우회의 민족운동론과 신간회』,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92, 2003; 정병준, 『우남 이승만연구』, 역사비평사, 2005.

6) 동아일보계열 및 호남지역 정치 세력의 일제하부터 해방직후에 이르는 정치활동과 노선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 참조. 윤덕영, 『1920년대 전반 민족주의 세력의 민족운동 방향 모색과 그 성격』, 『사

동향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정리할 것은 합법적 운동경향이 곧 일제에 타협적 운동이냐는 점이다. 타협과 비타협은 분명 대립하는 개념이다. 그렇지만 합법과 타협은 항상 일치되는 개념은 아니다. 또한 고정된 개념도 아니다. 합법적이어도 상황에 따라서 비타협적일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정세 속에서는 타협적일 수도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신간회 운동이다.

잘 알다시피 신간회는 비타협주의와 기회주의 배격을 표방했지만, 그 형식은 일제의 승인을 받는 합법 운동단체로서 조직되었다. 신간회 창립을 주도한 세력들은 원래 '신한회'로 계획된 명칭도, 또한 신간회의 강령에 있어서도 총독부 당국과 사전에 협의하였으며, 총독부의 수정 요구를 받아들여 명칭도 바꾸고, 강령도 수정하면서까지 합법 단체로 발족하였다.⁷⁾ 곧 창립부터 일제와 일정하게 협의(타협)하여 조직을 결성하였다. 여러 연구 등에서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신간회 창립을 주도한 세력들은 비타협운동과 좌익민족전선을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비합법적 영역의 조직을 구상하지 않았고 '표면운동'단체, 즉 합법적 정치운동의 차원에서 신간회의 형식과 내용을 고려하고 있었다. 심지어 조선공산당(이하 조공)을 비롯한 사회주의세력도 신간회를 시종일관 합법적 형태의 민족통일전선체로 구상하였지, 비합법적 형태의 조직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합법운동이 곧 타협적 운동이라는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합법의 틀을 유지하려고 애썼을까? 특히 신간회와 같은 민족단일당, 민족협동전선 조직의 경우, 합법적 틀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는 당시 민족주의세력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세력 다

학연구』 98, 2010; 『1920년대 전반 동아일보 계열의 정치운동 구상과 '민족적 중심세력론』, 『역사문제연구』 24, 2010; 『1920년대 중반 민족주의 세력의 정세인식과 합법적 정치운동의 전망』, 『한국근현대사연구』 53, 2010; 『1926년 민족주의세력의 정세 인식과 '민족적 중심단체' 결성 모색 - 소위 '연회' 부활 계획에 대한 재해석 -』, 『동방학지』 152, 2010; 『송진우 · 한국민주당의 과도정부 구상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지지론』, 『한국사학보』 42, 2011; 『1930년대 동아일보 계열의 정세인식 변화와 배경 - 체제비판에서 체제굴종으로 -』, 『사학연구』 108, 2012; 『미군정 초기 정치 대립과 갈등 구조의 증충성 - 1945년 말 한국민주당 주도세력의 정계 개편 운동을 중심으로 -』, 『한국사연구』 165, 2014.

7) 이근영, 앞의 책, 97~98쪽.

수도 1920년대 후반까지는 그렇게 사고했다. 물론 조선공산당 재건운동 시기에 이르면 이런 사회주의세력 인식이 바뀌게 된다.

이렇게 합법적 틀과 방식을 유지하려고 했던 이유는 운동에 광범한 대중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비합법적 운동방식이나 혁명적 투쟁으로서만 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특히 다양한 사상과 계급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광범한 정치세력과 대중을 망라하는 민족단일당, 민족협동전선이 되기 위해서는 합법적 틀과 합법적 운동방식의 유지가 중요하였다. 신간회는 합법의 틀을 유지한 결과, 총 142개의 지부와 수만 여 명의 성원을 결집시킬 수 있었다.

때문에 합법의 틀을 유지하면서 합법적 정치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곧 일제와 타협하는 것은 아니다. 합법적 영역에서도 비타협적으로 투쟁할 수 있으며 신간회 역시 그러하였다. 합법적 정치운동을 주장하는 것과 일제에 타협하는 것은 즉자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광범한 대중을 망라한 대중 정치운동을 위해 합법적 정치운동이 고려되는 것이고, 광범한 대중정치운동을 위한 합법적 정치운동은 세계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 운동사에서 뿐만 아니라 1920년대 조선의 민족해방운동사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되어 왔다.⁸⁾

합법적 정치운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겠지만, 크게 보면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대중의 당면한 일상적 이해와 제반 민주주의적 권리를 반영하는 운동과 투쟁을 말한다. 곧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위한 운동, 공민권 및 보통선거권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 조선인 본위의 경제제도 및 교육제도 쟁취운동, 노동자 및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단결권을 위한 운동, 자주적 협동조합운동의 제도적 보장운동 등을 말한다. 일본 무산정당운동도 이에 포함된다. 물론 일제는 이러한 합법적 영역의 정치운동조차도 1920년대 소위 ‘문화정치’ 기간 중에도 제대로 허용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를 공개적으로 탄압할 수도 없었다. 일본 본국에 한정되지만 1910년대 중반에서 1920년대 중반의 일본 사회는 소위 ‘다이쇼 데모크라시’로 상징되는

8) 윤덕영, 「신간회 창립과 합법적 정치운동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5, 2010a, 114~115쪽.

변화의 시기였다. 또한 보통선거법 제정과 보통선거 실시를 특권적 일본 권력핵심세력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에서 드러나듯이, 1920년대로 한정한다면 민주주의는 천황제하 일본에서도 시대의 대세였다.

문제는 합법적 정치운동은 그 합법적 형식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식민권력과의 타협과 협상을 필수적으로 동반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정도 타협하느냐는 조성된 내외의 정세를 반영하고 운동을 추진하는 세력과 막으려는 통치세력과의 역관계속에서 만들어지며, 주객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였다. 이 때문에 합법적 정치운동단체라고 해도 항상 합법적 틀 내에서만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아니다. 때에 따라서는 지배세력이 허용하는 합법의 틀을 벗어나 비합법적 운동을 전개하기도 한다. 또한 정세의 진전에 따라 이전의 비합법적 영역이 합법 영역이 되기도 하고, 합법 영역이 비합법 영역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합법적 정치운동은 지배세력과의 타협과 협상의 전제위에서 전개되는 일체의 합법운동 중에서 정치적 내용을 포함하거나, 지배세력과 정치적으로 부딪치게 되는 운동을 말하며, 운동세력과 지배세력의 역관계에 따라 그 영역이 변동한다고 할 수 있다.

식민지 합법적 정치운동은 그 내용에서 자치운동도 그 범주에 포함한다. 종래 자치운동에 대해서 일체의 지배를 용인하고 식민정책에 순응하는 타협적 정치운동으로만 평가해왔다. 친일정치운동세력과 재조일본인의 자치운동은 이런 평가가 타당하다.

그런데 1920년대 국내 민족운동세력의 다수가 크게 관심을 기울였던 아일랜드 민족운동의 경험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영국은 1920년 아일랜드 자치의회를 수립시킨다. 당시 영국에 대해 무장투쟁을 포함하여 비타협적 투쟁을 전개하던 신페인당은 영국이 설정한 자치의회에 참여했으며, 이를 적극 활용했다. 반면 영국에 타협적인 자치운동을 전개하던 아일랜드민족당은 몰락했다. 자치의회에 참여했음에도 신페인당의 무기를 놓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영국과 신페인당간의 일정한 협상과 타협의 결과, 1922년 아일랜드 자유국이 수립되었다. 이후 아일랜드자유국을 둘러싸고 신페인당 내부에서 내전이 전개되기도 했으나, 결국 내정의 독립을 이룬 자유국이 성립되었다.

일제의 식민정책학자뿐만 아니라 특권세력 및 군부세력, 정당핵심세력에서는 영국과 아일랜드의 경험을 보면서, 일본은 영국이 아일랜드에서 범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일랜드자유국을 제국의 영향력을 상실한 사실상 독립국으로 인식했으며,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식민지 조선에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에 조선 민족주의세력의 상당수는 신폐인당의 민족운동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⁹⁾

신간회는 합법 정치단체이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졌다. 합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협과 협상이 반드시 필요했다. 때문에 타협과 투쟁의 경계선에 있었다. 기존 일부 연구들에서는 신간회에 대해 민족운동의 목표를 구현한 이상적 단체로서 절대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반대로 다른 연구에서는 신간회를 민족운동이 노동계급 헤게모니하의 민족해방운동으로 전환·발전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고려되었던 전술적 통일전선체로서, 해소되어야 할 필연성을 가진 과정적 성격을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이들 모두는 신간회의 의의와 한계에 대한 일면적 파악이다.¹⁰⁾

신간회를 둘러싼 합법적 정치운동에 대해서는 신간회 창립전후의 일본과 중국 정세 변화에 주목하면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세력의 신간회운동론을 살펴본 한상구의 연구가 일찍부터 제기되었다.¹¹⁾ 그럼에도 합법적 정치운동과 관련하여 신간회를 조망한 연구들은 대단히 적은 편이었다.¹²⁾ 최근에 사회주의세력의 합법운동에 대해 윤효정은 신간회의 창립과정을 조공의 사상단체를 대신해 민족당을 새로운 합법단체를 결성하는 과정으로 파악하면서,

9) 자세한 것은 다음 참조. 윤덕영, 「1920년대 전반 민족주의 세력의 민족운동 방향 모색과 그 성격」, 『사학연구』 98, 2010, 370~381쪽.

10) 윤덕영, 앞의 논문, 2010a, 113~115쪽.

11) 한상구, 「1926~28년 민족주의세력의 운동론과 신간회」, 『한국사연구』 86, 1994; 한상구, 「1926~28년 사회주의 세력의 운동론과 신간회」, 『한국사론』 32, 1994. 한상구의 연구는 신간회 연구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고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 그렇지만 분석시야와 사실인식에서 여러 한계를 보이고 있었으며, 오랜 기간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문제의식이 확산되지 못했다.

12) 김형국의 박사학위논문이 대표적이다. 김형국, 「1920년대 한국 지식인의 사상분화와 민족문제 인식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조공이 자치주의를 견제하기는 했으나 일시적으로 자치운동을 전술적으로 고려하기도 했고, 자치운동에 대해 방임적 입장을 취했다고 제기했다.¹³⁾ 또한 김영진도 1926년 정우회선언이 가진 합법운동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면서, 조공의 합법운동과 자치정책에 주목한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였다.¹⁴⁾

신간회와 민족주의세력의 합법적 정치운동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한 것은 윤덕영이다. 그에 따르면 신간회 창립은 내용상으로는 사회주의세력과 민족주의세력 내에서의 1920년대 전반이래의 민족문제와 민족통일전선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를 위한 합법적 정치운동에 대한 인식이 발전하면서 만난 접점이었다. 일본에서의 보통선거의 실시와 무산정당운동의 발전에 대한 낙관적 전망, 그리고 무엇보다도 1926년 중반이후 중국 국민혁명군의 성공적인 북벌이라는 긍정적인 국제정세의 변화에 고무된 조선의 민족주의세력과 사회주의세력은 광범한 대중을 망라한 민족협동전선, 민족적 중심단체를 결성하려고 하였고, 이는 신간회 창립으로 나타났다.¹⁵⁾ 그럼에도 민족주의세력 내의 유력한 두 세력, 안창호와 조만식을 중심으로 한 홍사단·수양동우회 및 서북지역 정치세력, 그리고 송진우를 중심으로 한 동아일보 계열과 호남지역 정치세력은 신간회 창립에 부분적으로 관여했을 뿐 본격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그렇지만 1927년 후반 들어 국내의 정세가 변화하면서 이들은 ‘민족적 총역량 집중’론을 주장하며 신간회로 합류하게 된다.¹⁶⁾

한편 신간회의 참여 및 주도세력은 고정된 것이 아니었다. 정세변동에 따른 일제하 민족운동의 정치적 지형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초기 중앙간부들은 조선일보·시대일보 계열과 홍업구락부·기호지역 정치세력이 주도하였으나, 1927년 말 부터 동아일보 계열·호남지역 정치세력과 수양동

13) 윤효정, 『신간회운동연구』, 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14) 김영진, 『일제하 사회주의 운동과 정우회』,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15) 윤덕영, 『신간회 창립 주도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의 정치 지형』,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8, 2011, 119~120쪽.

16) 윤덕영, 『신간회 초기 민족주의세력의 정세인식과 ‘민족적 총역량 집중’론의 제기』, 『한국근현대사연구』 56, 2011, 46~72쪽; 윤덕영, 『신간회 초기 민족인론 세력의 정세인식 변화와 ‘민족적 총역량 집중’론의 성격』, 『신간회와 신간회운동의 재조명』, 선인, 2018, 231~255쪽.

우회·서북지역 정치세력도 합류하였다. 또한 1928년 8월에는 조선일보 계열이 대거 신간회 본부에서 후퇴하게 된다. 조선공산당을 비롯한 사회주의 세력은 1927년 중반이후 각 지방 지회를 중심으로 신간회 내에서 세력을 점차 확장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사회주의세력도 각 계파별로 서로 다른 대응을 하고 있었다. 1929년 6월의 북대표대회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중앙조직에 커다란 변화가 있게 된다. 그리고 1929년 12월 민족주의세력이 주도된 민중대회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신간회 중앙간부들이 대거 구속되면서 신간회 지도부는 또 다른 변화를 겪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런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우선 1930년 전후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정세 변화를 일본 제2차 중의원 보통선거의 실시와 식민지 조선의 지방제도 개정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당시의 민족주의 세력들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판단하고 있었는가, 이런 정세변화가 그들의 운동 전개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당사가 천도교 및 기독교계열, 동아일보계열, 신간회 등의 광범한 세력이 관련된 자치운동이 전개될 수 있는 정세가 아니었다는 것을 해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천도교 및 기독교계열, 동아일보계열의 동향을 살펴보면서 이들의 활동을 일제의 지원을 받는 타협적 자치운동과 관련시키는 주장의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에 대신하여 1930년 전후 천도교와 기독교계열, 동아일보계열 등 민족주의세력의 실제 활동 양상과 주장을 복원하고, 신간회 김병로 중앙집행부의 조직 실상과 성격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2. 식민지 조선의 지방제도 개정과 일본 중의원 제2차 보통선거

1) 식민지 조선의 지방제도 개정과 합법 정치 공간의 한계

1920년대 후반 합법적 정치운동은 일본 무산정당운동과 한국의 신간회 운

동에서 보이듯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지만, 그 합법정치가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은 도리어 급격히 축소되어 갔다.

1929년 7월 민정당의 하마구치 오사치(濱口雄幸)내각이 수립되었다. 하마구치 수상이 천황과 궁중, 추밀원측과 타협하면서 1929년 8월, 사이토가 조선 총독으로 재임명되었다.¹⁷⁾ 하마구치 민정당 내각이 출범했지만, 정당의 군부통제력은 여전히 약하였다. 1920년대 들어 정당정치가 일반화되었음에도 천황을 정점으로 내각과 군부가 각기 권력을 갖고 병립하고 있는 일본의 특수한 정치구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전임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 수상은 조슈 번벌과 육군대신 출신으로 군부에 강력한 기반과 권한을 갖고 있었음에도 군부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 다나카도 못한 군부 통제를 허약한 민정당의 정치가들이 한다는 것은 일본 천황체제하에서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

사이토가 조선총독에 부임할 때 식민지 조선에 대한 군부세력의 영향력과 관심은 여전히 컸다. 만주침략을 앞두고 있는 군부세력에게 관동군의 후방을 위협할 수 있는 식민정책의 커다란 변화는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당시 하마구치 내각의 육군대신이던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는 “現狀에 조선인에게 참정·자치를 허용하는 것은 하늘이 나에게 내린 명을 저버린 것이다. 반도 2천 만 동포로 하여금 內爭과 혼란과 기근과 쇠망으로 이끌어 가는 것 외에는 어떠한 것도 수습하기 힘들다.”라고 단정하였다.¹⁸⁾ 식민지 지배정책의 변화에 대해 반대하고 용납하지 않겠다는 군부의 의지를 반영한 주장이었다.

때문에 재부임한 사이토는 이런 본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조심스럽게 식민지 조선의 지배 정책 변화를 모색하였다. 사이토는 기존 연구들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토착관료의 대표주자인 이쿠타 세이사부로(生田清三郎) 내무국장을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선에 참정권 문제를 실현하는 방안을 연

17) 자세한 것은 다음 참조. 岡本眞紀子, 『植民地官僚の政治史－朝鮮・臺灣總督府と帝國日本－』, 三元社, 2008, 526~528쪽; 松田利彦, 『日本の朝鮮・臺灣支配と植民地官僚』, 思文閣出版, 2009, 576~578쪽; 李炯植, 『朝鮮總督府官僚の統治構想』, 吉川弘文館, 2013, 223~227쪽.

18) 角田順校訂, 『宇垣一成日記』 1, 국학자료원, 1993, 1929. 11. 8.

구하고 안을 작성하였고, 소수의 제국의회 귀족원 칙선의원을 선임하고, ‘조선지방의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만들었다.¹⁹⁾

그런데 이 ‘조선지방의회’는 실질적인 법률 제정 권한도 없고, 토목, 위생 및 병원, 교육, 권농, 구제 등에 한정된 1929년도 전체 총독부 예산의 7%에 불과한 조선지방비 예산과 결산만을 심의할 뿐이며, 법률과 제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한 조선지방비에 속한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총독부령만을 다룰 수 있을 뿐이었다. 조선지방의회는 총독에 대해 의견서 제출 및 총독의 자문에 대한 의견 답신만을 할 수 있을 뿐인데 반해, 총독은 조선지방의회 결의에 대한 취소 및 재의 명령, 원안 집행, 정회, 해산 등의 막강한 감독권한을 가져 조선지방의회를 언제라도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 심지어 지방의회 권한에 속한 사항이라도 임시시급을 요하는 경우, 총독이 전 결처분 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됨으로써 총독부 전체 예산의 7%에 한정된 지방비 관련 예산조차도 총독부 관료들이 언제든지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원의 1/3은 관선으로 선발할 수 있을 뿐더러, 나머지 2/3의 민선도 제한선거권을 통해 소수의 재조일본인 유권자는 대폭 확대하고, 다수의 조선인 유권자는 줄이도록 안배된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구상했다. 1929년의 사이토와 조선총독부 관료들이 구상한 조선지방의회안은 사이토가 1927년에 마련한 자치제안 보다도 대폭 후퇴된 구상이었고, 그마저도 10년 후어나 실시한다는 대단히 기만적인 것이었다.²⁰⁾

문제는 이런 기만적 ‘조선지방의회’안조차 사이토는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 없었다. 1929년 10월 고다마 정무총감이, 12월 사이토 총독이 잇달아 일본으로 건너가, 내각 요인 및 중앙조선협회 주요 인물들과 협의했지만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내각에서는 마츠다 척무대신과 우카키 육군대신이 부정적이었고, 미즈노 렌타로(水野鍊太郎) 등 중앙조선협회 주요 인물 등도 조선의

19) 당시 안의 작성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김동명, 『지배와 저항, 그리고 협력-식민지 조선에서의 일본제국주의와 조선인의 정치운동-』, 경인문화사, 2006, 439~454쪽; 이형식, 앞의 책, 232~238쪽; 이태훈, 『일제하 친일정치운동연구』, 연세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233~243쪽.

20) 자세한 내용은 다음 참조. 윤덕영, 『1930년 전후 조선총독부 자치정책의 한계와 동아일보계열의 비판』, 『대동문화연구』 73, 2011b, 364~372쪽.

회 등과 같은 것은 조선인들의 충동을 일으켜 장래 화근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반대하였다.²¹⁾

이렇게 되자 사이토는 조선지방의회안을 포기하였다. 그리고 도평의회와 부협의회, 지정면협의회를 의결기관화를 하는 지방행정제도 개선방안을 마츠다 척무대신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보았다.²²⁾ 이후 추가 협의를 거쳐 3월 11일, '조선지방자치권 확장안'이 일본 각의에 제출되었다.²³⁾ 이로써 사이토 총독의 조선지방의회안은 도·부·읍회의 제한된 권한만을 갖는 의결기관화와 자문기관인 면협의회의 선거제 도입이라는 한정된 지방행정제도 개정으로 결론 나고 말았다. 노회한 인물인 사이토는 본국 권력동향을 처음부터 의식하면서 식민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었다. 그들이 반대하는 안을 추진할 의지는 처음부터 없었다.²⁴⁾ 이렇게 조선지방의회안이 좌절되고 지방행정제도 개정으로 귀결되면서, 이후 총독부에서의 자치제 움직임은 거의 사라지게 된다. 총독부내 하에누키 관료, 즉 토착 일본인 관료들도 더 이상 자치제 주장을 하지 않게 된다.

조선지방제도 개정안은 이후 법조문의 정리만을 거쳐 11월의 일본 각의를 통과하였으며, 천황의 재가를 받아 11월 29일과 12월 1일자로 관련 칙령과 제령, 총독부령의 개정이 공포되었다. 물론 1930년 3월 각의에 제출된 내용이 별 수정사항 없이 통과되었다. 이러한 지방행정제도 개선에 따라 1931년 4월 1일부터 지방제도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5월 21일에 부와 읍, 면의 지방의원 선거가 예정되었다.

조선의 지방제도 개정은 일본 국내가 25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제한 없는 보통선거를 실시한 것과 달리, 5원 이상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선거권을 규정하고 있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총독부는 조선인의 학교비와 일

21) 森山武徳, 『日本の政治支配と朝鮮民族主義 - 1920年代の '朝鮮自治論'을中心として -』, 北岡伸一編, 『戦争・復興・発展 - 昭和政治史における権力と構想』, 東京大學出版會, 2000, 23~24쪽; 李炯植, 앞의 책, 239쪽.

22) 『동아일보』, 1930.3.3.

23) 『경성일보』, 1930.3.12; 『매일신보』, 1930.3.12.

24) 윤덕영, 앞의 논문, 2011b, 360, 373~374쪽.

본인의 학교조합비를 부세에 통합하는 것을 통해 일본인 선거권자를 대폭 확대하였다. 그 결과 경성을 비롯한 대부분의 부에서 일본인 선거권자가 조선인 선거권자 수를 압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²⁵⁾ 조선의 경우 부로 한정하면 부거주 조선인의 약 2.7%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다. 반면에 부거주 일본인의 경우는 약 14%가 선거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 전국 각부의 유권자 비율은 조선에서의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주자에 상관없이 일본인이 62.5%를 점하였고, 조선인은 그 절반 조금 넘는 37.5%에 그쳤다.²⁶⁾ 과거 지정면이었던 곳에는 의결기관으로서 읍회가 설치되었지만, 보통면에는 자문기관으로서 면협의회가 설치되었다. 일본인은 읍지역에서 10% 내외, 면지역에서도 5~10%가 선거권을 가졌던 반면에, 조선인은 읍과 면 모두에서 2% 미만이 선거권을 가졌다.²⁷⁾ 지방행정기관의 최고기관인 도제의 시행은 더 미루어졌고, 1933년 2월 1일자 총독부령으로 공포되어,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일제의 1930년 전후 지방제도 개정은 몇 가지 결과를 가져왔다. 첫째, 식민지 의지에 거주한다는 것 때문에 정치적 권리를 상실한 재조일본인들의 정치적 요구를 일정부분 충족시켰다. 재조일본인들은 보통선거가 실시된 일본 본국보다는 못 미치지만 상당한 선거권의 확대가 이루어졌다.²⁸⁾ 의결 기관화된 부회와 읍회, 도회의 의원으로 이들이 진출할 수 있는 의원수도 확대되었다. 1930년 지방제도 개정의 최대 수혜자는 사실 재조일본인이었다. 둘째, 한계가 많고 제한된 것이지만 의결권을 가진 도회와 부회, 읍회가 구성되어

25) 경성의 경우 1929년 부협의회 선거에서는 조선인 유권자 4,660명, 일본인 5,885명으로 크게 차이가 없었던 반면, 1931년 선거에서는 조선인 7,890명, 일본인 14,843명으로 2배로 차이가 벌어졌다.

26) 자세한 내용은 다음 참조. 손정목, 『한국지방제도·자치사연구: 갑오경장~일제강점기』(상), 일지사, 1992, 240~272쪽.

27) 허영란, 『일제시기 읍·면협의회와 지역정치-1931년 읍·면제 실시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31, 2014, 137쪽.

28) 일본의 경우 보통선거가 처음 실시된 1928년 중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의 비율은 여전히 전 인구의 21%에 머물렀다. 이는 부인참정권이 없었고, 유권자 연령도 25세 이상으로 제한되었으며, 그나마 빈곤으로 부조를 받거나 일정한 주거를 갖지 않는 자를 유권자에서 제외하여 25세 남자인구 중 12%가 선거권의 제한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식민지 조선의 1931년 지방선거에서 부의 경우는 일본인의 14% 내외, 읍의 경우는 10% 내외가 선거권을 가졌다. 동선희, 『식민권력과 조선인 지역유력자-도평의회 도회의원을 중심으로-』, 선인, 2011, 80~81쪽.

지방정치의 공간이 형성되었다. 이는 정치적 참여를 희망하는 식민지 조선인들의 참여 공간이 제한적이지만 만들어졌다는 의미이며, 일제는 조선인 지역 유력자들을 이 공간으로 끌어들이려 하였다.²⁹⁾ 셋째, 만들어진 합법 정치공간이 극히 제한되고, 권한에 한계가 있어 지방자치의 정치공간으로 작동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이다. 5월 이상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선거로 조선인의 유권자 비율은 일부 부를 제외하고는 인구의 2%을 넘지 못했다. 식민당국에 협조적인 ‘유산계급’에게만 선거권이 부여된 극도의 제한선거였다. 더군다나 조선인이 다수를 점하는 면협의회는 의결기관도 아닌 자문기관이었다. 도회와 부회, 읍회가 의결기관이기는 했지만, 그 권한이 제한되었고, 식민관료인 도지사과 부윤, 읍장이 의장을 겸임하면서 감독권을 비롯한 절대 권한을 가졌다. 이런 극히 제한되고, 권한도 별로 없는 지방정치 공간은 지방정치 참여의 의미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은 1920년대 합법적 정치운동을 전개하던 좌우의 식민지 민족운동 세력에게 커다란 제약으로 다가왔다. 일본 중의원에 비견되는 ‘조선의회’이라는 합법적 정치공간 창출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합법적 정치활동의 목표가 사실상 사라져버렸다. 극도의 제한선거와 도·부·읍회 의원들의 제한된 권한, 면협의회와 자문기관 유지, 총독부의 철저한 통제 등은 도회와 부회, 읍회와 면협의회 등 지방자치 기관에 대한 그들의 참여 명분을 빼앗았다.

2) 1930년 일본 중의원 제2차 보통선거, 식민지 민족운동 세력의 평가

식민지 조선의 지방제도 개정이 추진되던 1930년 2월 20일, 제2차 보통선거로 일본 중의원 총선거가 치러졌다. 이전 1928년 2월 제1차 중의원 보통선거의 결과와 그 이후 일본 무산정당운동의 전개과정은 일본 제국에서의 합법운동의 가능성과 한계를 보여주었다.

29) 이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이태훈, 『1930년대 일제의 지배정책 변화와 친일정치운동의 ‘제도적’ 편입과정』, 『한국근현대사연구』 58, 2011, 151~152쪽.

제1차 보통선거에서는 정우회가 219석, 민정당은 216석을 차지하면서 기존 보수정치세력의 압도적 우위를 보여주었다. 무산정당에 대해서는 일제의 각종 제재와 선거 방해가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무산정당은 노동당 2석과 사회민주당 3석 등 총 8석을 얻었다. 당선 의석은 적었지만, 총 46여 만 표를 얻어 전체 득표율에서는 약 5%를 차지하는 기대 이상의 성적을 기록했다.³⁰⁾ 노동당, 일본노동당, 사회민주당 간에 선거협정이 체결되었고, 노동자들의 일상투쟁과 연계된 총선거 투쟁이 전개되었다. 무산정당의 의회 진출을 큰 위협으로 받아들인 일제 권력집단은 3·15탄압사건을 일으켜 공산당에 대한 대대적 탄압과 함께 노동당을 해산시켰다.

일본공산당 세력은 당을 재건하였지만, 1929년 4.19탄압사건, 1930년 2·26탄압사건으로 궤멸적 타격을 받았다. 탄압이 극심해지자 일공의 투쟁은 점점 비합법 투쟁 일변도로 전환하기 시작했고, 해산된 노동당 대신 1928년 12월 결성한 노동동맹은 당의 투쟁 도구로 작동했다. 오야마 이쿠오(大山郁夫), 가와카미 하지메(河上肇) 등이 당내의 민주화와 합법적인 노동당 수립을 주장하다가 제명되었다. 1929년 1월 전국적 무산정당인 일본노동당과 일본농민당, 무산대중당, 그리고 구주민헌당과 중부민중당 등 지방 4정당들을 합동해서 일본대중당이 결성되었다. 그렇지만 일본대중당은 결당직후부터 분열에 휩싸였고, 구 무산대중당 계열과 구 일본농민당계열이 탈당 또는 제명되면서 사실상 합당전의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일본 사회주의세력의 좌파, 중간파, 우파가 모두 분열하였다.

그런 가운데 1930년 2월 20일 중의원 제2회 보통선거 실시가 예정되었다. 당시 식민지 조선의 동아일보 주도세력은 일본 무산정당의 귀추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에 관한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였으며, 간간히 사설을 통해 무산정당운동의 전개과정과 과제, 전망 등을 제시했다.³¹⁾ 첫 번째 보통선거를 통해 8석의 적은 의석이지만 5% 가까운 득표율을 보인 무

30) 四本四郎 지, 이종석 역, 『일본정당사』, 예문관, 1986, 334쪽.

31) 『일본 무산정당의 귀추-결국소당분립 호아』, 『동아일보』, 1929. 9. 4; 『일본 무산 계급운동의 최근, 노동당의 성립 등』, 『동아일보』, 1929. 11. 14; 『일본 무산 정당운동의 近情』, 『동아일보』, 1930. 1. 7.

산정당이 이번에는 얼마나 약진할 수 있을지가 동아일보의 최대 관심 사항이었다.³²⁾ 보통선거 실시가 확정되자 바로 발표한 1930년 1월 24일자 보통선거에 관한 사설은 신흥세력, 즉 무산정당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사설은 제2회 보통선거가 일찍 실현된 것은 일본 민중의 정치적 훈련으로 의미 있는 것이고, 신흥정당 진출의 기간을 더 빠르게 할 것이라면서 선거에 경험을 얻은 무산정당의 분전에 따라 일본 정계에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보이고 있었다.³³⁾ 같은 날짜에는 12~16명 사이의 당선을 예상하는 기사를 크게 실기도 했다.³⁴⁾ 이런 기대는 일본 무산정당의 획기적 진출에 따라 일본 정계가 변화하면, 이에 연동되어 식민지 조선의 지배정책과 정치지형도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이런 인식은 조선일보도 비슷하였다. 1월 25일자 「무산선거운동」 제하의 권두 시평을 통해, 무산정치운동 특히 선거운동이 3가지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첫째는 무산계급의 대표자를 의회에 보내는 것이고, 둘째는 선거운동을 통해 무산계급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것, 셋째는 기성정당의 정치적 허위와 추태를 폭로하는 것이다. 시평은 일반 무산정치전성의 전위들이 1회 보선의 쓰라린 경험으로, 무산정당 각파의 선거협정의 파괴로 후보가 난립하는 사태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1회 보선의 2배의 성적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조선의 인민은 일본 기성정당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불평을 가진 자”로 “신흥일본무산정당에 대하여 많은 흥미를 가지는 동시에 일본정치의 公道를 그들에게만 기대할 것”이라면서 “정치의 공도를 전망함에 있어서 조선은 그 전망대요, 정치의 醜狀을 폭로함에 있어서 조선은 그 확대경이다. 전망대에 올라 확대경을 보라”고 주장했다.³⁵⁾ 시평은 일본 무산정당에 대한 기대를 보이는 동시에, 그들에 대한 기대가 식민지의 문제 해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무산정당세력이 이를 자각하기 바란다는 희망을 내포하고 있었다. 조선일보의 제2회 보통선거에 대한 낙관과 기대는

32) 윤덕영, 앞의 논문, 2011b, 360, 382쪽.

33) 「일본의 제2회 보선총선거」, 『동아일보』, 1930. 1. 24.

34) 「기성당 暴亂시대 무산과 약진 호기」, 『동아일보』, 1930.1.24.

35) 『조선일보』, 1930. 1. 25.

계속되었다. 누차 관련 기사를 내보냈고, 선거 직전에는 도쿄발 기사를 인용하여 12~13명의 당선이 확실하다고 전망했다.³⁶⁾

그러나 이런 민족언론 세력들의 기대와는 달리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일본 무산정당은 내부의 파쟁과 분열로 공동전선을 형성하는데 실패했다. 동아일보는 이러한 일본 사회주의세력의 분열 양상을 알고 있었고, 이런 분열을 비판하였다.³⁷⁾ 이후 동아일보의 무산정당에 대한 기사는 지속적으로 게재되었지만, 점차 비판적으로 흐르고 있었다.

1930년 2월 20일 보통선거로 중의원 총선거가 치러졌다. 결과는 민정당 272석, 정우회 172석으로 민정당이 압승하였다. 반면에 무산정당은 사민당이 2석, 일본대중당이 2석, 노농당이 1석, 총 5석에 불과했다. 무산정당은 이제 찻잔속의 태풍신세가 되었다.

동아일보는 선거 결과가 전해지자마자 사실을 통해 우선 민정당이 압승한 선거결과를 구인물의 대거 낙선과 신인물의 등장, 철세정치인의 몰락, 중간파의 격감, 정책 본위 정치의식 증대 등으로 분석하였다.³⁸⁾ 무산정당에 대해서는 이들 뒤 별도의 사실을 통해 상세히 분석하였다. 사실은 보선 전에 기성 정당이 미증유의 추태를 노정하였음에도 무산정당이 예상보다 훨씬 적은 총 5명의 당선자만을 낸 것이 놀람을 넘어 ‘괴이’하다면서, 그 주된 원인을 대중의 무자각과 기성 정당의 매수정책에 돌리는 것에 반대하였다. 그보다는 지난 선거보다도 득표율에서는 3만 표 이상을 얻었음에도 의석을 적게 얻은 것은 지도자의 책임, 즉 분열과 대립, ‘불협정과 무양보’가 최대 원인이라고 분석하였다. 이제 무산정당은 기성 정당의 위협거리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운동의 기초공사조차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 있게 되었다고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중의 무지를 탓할게 아니라 지도자의 과오를 자각하고 합동으로 나갈 것을 주장했다.³⁹⁾

36) 『조선일보』, 1930. 2. 22.

37) 『일본무산정당의 난전-대동에 취하라』, 『동아일보』, 1930. 1. 28.

38) 『일본총선거의 결과』, 『동아일보』, 1930. 2. 24. 동아일보는 민정당의 배경은 금융자본이고, 정우회의 배경은 산업자본이라고 파악하면서, 이번 선거가 금융자본의 산업자본에 대한 승리로 보고 있었다.

39) 『일본무산계급운동전망-분열에서 합동?』, 『동아일보』, 1930. 2. 26.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민정당의 압승이 자신들의 예상과 달랐다고 하면서, 무산정당도 최소 12~13인의 당선을 예상했는데 5인밖에 당선되지 못한 것이 예상과 달랐다고 자평했다. 사설은 무산정당의 실패가 전선통일의 실패로 인해 서로 대립하고, 무산계급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⁴⁰⁾ 다음날 조선일보는 별도의 「분열의 화-무산당 실패의 의의」라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무산정당 각파의 유력후보들이 ‘동지상잔(同志相殘)’으로 인한 득표의 분할로 선거에서 낙선했다고 분석했다. 사설은 무산정당의 득표율이 제 1회 보통선거 때보다 3만3천 여 표가 증가한 50만 4천 여 표임에도 불구하고, 기대이하의 성적을 거둔 것은 무산 각파의 ‘동지적 협동’ 또는 ‘합동결속’하여 전선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시급 또는 중대한 문제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 하였다. 사설은 일본 국민 대부분이 아직 봉건적 사상 감정과 자본주의적 의식 하에 생활하기 때문에 무산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근로대중이 무산당을 향하기 위한 선결적인 최대조건은 당과 당을 지도하는 전위적 투사들이 스스로 ‘힘’을 구현하고, 겸하여 그 진용을 선명 고양하는 것이 필요하며, 분열과 서로에 대한 적대적인 조소가 그들에게 큰 타격이 된다고 주장했다.⁴¹⁾ 일본 무산정당의 통일을 바라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계속되었다. 1930년 3월초 조선일보 사설은 일본 무산정당이 좌우의 뉘이 다르고, 단체의 분이 있지만, 기성정당의 폭정에 대항하기 위한 선거합작은 절박한 것이었다면서, 분열의 쓰라린 실패를 딛고 힘있는 합동을 할 것을 주문하였다. 사설은 우리도 분열의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서, 일본 무산정당운동의 경험을 통해 우리의 운동을 반추할 것을 주문하였다.⁴²⁾

그렇지만 일본 무산 정당간의 합동은 이후에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보통선거 직후인 2월 26일, 공산주의세력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대적인 검거가 전개되었다(2·26사건). 이 때문에 일본 무산정당의 진출을 통해 일본 정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조선정책의 변화를 기대했던 동아일

40) 「민정당의 승리」, 『조선일보』, 1930. 2. 24.

41) 「분열의 화-무산당 실패의 의의」, 『조선일보』, 1930. 2. 25.

42) 「힘있는 합동론」, 『조선일보』, 1930. 3. 4.

보의 기대는 점차 악화되어 갔다.⁴³⁾ 조선일보는 상대적으로 동아일보 보다 무산정당 합동의 기사를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었지만, 역시 그 전망에 대해서는 점차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⁴⁴⁾ 그런 가운데 동아일보는 4월 4일부터 6일까지 김장환의 1920년대 세계 무산정당의 정권 장악에 대한 논설을 3회에 걸쳐 게재하였다. 다분히 세계 무산정당이 어떻게 정권을 장악했는가를 돌아봄으로써 현재의 무산정당운동에 교훈을 주겠다는 의도였다.⁴⁵⁾ 그렇지만 식민지 조선 동아일보의 주장이 일본 무산정당 및 국내외 사회주의 세력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은 불문가지였다.

민족언론 세력들의 일본 정계에 대한 전망은 1930년 2월 제2회 보통선거의 결과를 계기로 부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무산정당의 참패는 일본 정계의 민주적 변화 전망을 어둡게 하는 것이었다. 이는 곧 식민지 조선정계의 변화나 진보가 가능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일본 정계가 변화하지 않는 한, 조선의회 같은 자치제 실시는 결코 이루어질 수도, 기대될 수도 없는 것이 되었다. 조선에서 합법적 정치공간의 확대는 이제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 전망과 비관적이었다.

3. 합법정치를 둘러싼 민족주의 세력의 동향과 분화

1) 천도교계열의 동향과 자치운동 구상의 배경

강동진 연구 이래 오랫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해온 것처럼, 천도교 신파의 지도자 최린은 사이토 총독이 재차 부임한 이후 조선에서의 자치제 실시를 전망했다.⁴⁶⁾ 일제 관헌사료에서는 최린이 장래 조선민족의 진로는 자

43) 『일본무산정당 합동문제, 당분간실현 무망』, 『동아일보』, 1930. 3. 28.

44) 『좌익? 우익? 중간? 무산당합동의 전도』, 『조선일보』, 1930. 3. 29.

45) 김장환, 『세계의 속풍: 1920년~30년 무산정당의 정권장악』 (상)~(하), 『동아일보』, 1930. 4. 4~6.

46) 관헌자료에 따르면 최린은 1930년 1월 '自治運動速進會'을 만들어 자치제 실시에 대한 여론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京城鐘路警察署長, 『自治運動速進會設立に關する件』, 1930.1.14.

치로 나아가는 길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 결의하였으며, 1930년 초에는 이런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주변에 토로하였고, 구파의 권동진을 방문하여 양해를 구했으며, 송진우 및 이정섭과 비밀리에 의견을 교환하면서 점차 일반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⁴⁷⁾

문제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1930년 3월 들어 사이토의 조선 지배정책 변화가 조선지방의회 설립이 아니라, 조선 지방제도 개정으로 결론 났다는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최린의 차지문제에 대한 의지가 계속되었다는 점이다. 1930년 4월 천도교 기념일을 위해 천도교 지방 지도자들이 상경하자, 최린은 1930년 4월 4일 주간포덕사회에서 자치운동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관헌자료에서는 주간포덕사회에서 최린이 천도교의 갱생을 위해 조선 현하 정세에 적합한 자치운동에 대한 결의 의중을 피력하여 동의를 구하였다고 파악하고 있다.⁴⁸⁾ 많은 연구들이 일제의 관헌사료를 인용해서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최린이 이때부터 자치운동을 본격화하였다고 보고 있다.

최린의 발언이 확대된 것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에 대한 천도교 구파의 적극적인 반대행동 때문이었다. 구파의 이종린이 반대 담화를 발표했고, 4월 8일 천도교청년동맹은 자치운동 절대반대를 결의하였다.⁴⁹⁾ 이에 4월 9일 청년단 본부의 당원 다수가 청년동맹 결의의 진부를 질문한다며 청년동맹 사무실로 찾아가서 양측 간의 난투극이 벌어져 다수의 중경상자가 발생했다.⁵⁰⁾ 천도교 내부에서 세력에서 크게 밀리고 있던 구파세력은 최린의 발언을 신파 공격의 좋은 매개로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천도교내의 분파대립과 천도교신파의 주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1925년 말 제2차 분규를 계기로 신파와 구파로 분리된 천도교는 1920년대 후반 들어 신파의 교세는 크게 증가하였다.⁵¹⁾ 신파는 천도교인 전체의 80%이상을 확보한 주류였으며, 천도교청

京鐘警高秘 604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id/had_142_0260

47) 京畿道警察部, 『治安狀況』, 박경식 편, 『朝鮮問題資料叢書』 6권, アジア問題研究所, 1982, 292쪽.

48) 京畿道警察部, 앞의 책, 293쪽.

49) 『조선일보』, 1930. 4. 9; 『동아일보』, 1930. 4. 9.

50) 『조선일보』, 1930. 4. 10.

년당(이하 청년당)은 ‘민족운동중심세력론’과 전위당론에 입각해서 전위조직으로 역할을 수행했다. 최린을 중심으로 한 청년당의 주요 지도자들은 김기전, 이돈화, 박달성, 박시직, 조기간, 방정환, 이두성 등으로 방정환을 제외한 이들 대부분은 이복출신의 천도교 최고 엘리트였다.⁵²⁾

천도교 구파는 천도교 신파에 비해 절대적인 약세에 있었다. 구파는 신파가 내세운 인내천주의나 수운주의를 그대로 수용·답습하였으며, 독자적인 교리나 사상을 정리하지 않았다. 대신에 대동단결과 대동주의에 기반하여 여타 민족주의 및 사회주의세력과의 민족협동전선 결성에 적극적이었고, 신간회에 적극 참여했다.⁵³⁾ 그러나 신간회 본부에서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던 천도교 구파 세력은 일부 민족주의자 및 사회주의자들과 손을 잡고 신간회 경성지회 지도부를 장악하였다. 그들은 신간회의 힘을 빌어 최린과 신파를 저지하려 했다. 더 나아가 신파와 신간회 중앙본부간의 연계 가능성을 차단하려 하였다. 1930~1931년 초의 신간회 본부와 경성지회와의 대립에는 천도교 내 신·구파 대립이라는 요소가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반면에 신파와 청년당 지도자들은 민족협동전선운동에 비판적이었다. 그들은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 연합해 조직한 신간회 같은 민족협동기관은 주의와 정책, 전술이 다른 세력들이 막역하게 합동하였기 때문에 민족 단일당으로서의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 대신에 종교 및 각 부문운동 대중단체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그 단체들을 토대로 전민족적 협동기관을 두어 일치행동을 할 것을 주장했고, 천도교의 청년당이 독자적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그들은 청년, 농민, 노동 등 7개 부문운동의 전개와 조직의 정비, 세포조직의 확대 등으로 신간회를 중심으로 한 민족연합전선운동에 대응하였다.⁵⁴⁾

그들은 동아일보계열이나 기독교계열과 달리 다른 제 사회세력과의 연대보다는 자신들의 세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독자 활동에 주력했다. 그것

51) 자세한 내용은 다음 참조. 김정인, 앞의 책, 193~272쪽; 성주현, 앞의 책, 157~208쪽.

52) 성주현, 앞의 책, 175~176쪽; 조규태, 앞의 책, 155~163쪽.

53) 김정인, 앞의 책, 254~259쪽.

54) 성주현, 앞의 책, 232~236쪽.

은 자신들의 주의·주장이 가장 옳은 것이라는 종교적 신념에서 출발한 것이면서도 자신들의 조직이 조선의 정치를 담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었다.⁵⁵⁾ 그들은 기본적으로 종교적 신념으로 뭉쳐 있는 집단이었기 때문에 정치조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념과 노선이 다름에도 이루어지는 정치적 타협이나 흥정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있어 신간회는 이념과 노선이 혼재되어 있는 조직이고, 자신들이 극복해야 할 경쟁대상이었을 뿐이었다. 신간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처음부터 주된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⁵⁶⁾ 이런 사정이 1930년 2월, 신간회 중앙본부로부터 천도교 신파의 입회 권유, 즉 청년당과 신간회와의 협동 제의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면서 반신간회 운동을 지속 전개한 주된 이유였다.

1930년 3월부터 11월까지 재조일본인과 친일정치세력의 자치운동을 제외하고 당시 민족주의 민족운동 세력 내부에서 자치운동과 관련한 구체적 활동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최린의 발언을 계기로 한 천도교 신파에 대한 의혹이 알려진 정도이다. 만약 실제 자치운동을 전개하였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활발한 움직임이 있어야 했다. 이는 당시 기대를 갖고 상대적으로 활발히 발언하고 활동하였던 재조일본인 및 친일세력들의 자치운동을 놓고 보면 알 수 있다. 만약 식민지 조선에 조선의회(조선지방의회)가 결성된다고 하면 재조일본인과 친일정치세력은 천도교의 유력한 경쟁자이기 때문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1930년 10월 들어 전개된 천도교 신파의 청년당과 구파의 청년동맹의 합동제기와 일련의 과정을 자치운동의 일환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를 자치운동의 일환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많다. 일단 자치운동에 비판적인 천도교 구파가 이에 적극 호응했다는 점이다. 천도교 신파와 구파는 1930년 10월 16일과 11월 11일, 수녀부의 비공식 회합을 거쳐 합동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절충을 거쳐 12월 23일 신구파의 합동대회를 개최해 전격 합동을 결의하였다. 1931년 2월 16일에는 신파의 천도교청년당과 구파

55) 정용서, 『일제하 천도교청년당의 운동노선과 정치사상』, 『한국사연구』 105, 1999, 259~260쪽.

56) 물론 천도교 신파의 인물 중 개별적 차원에서 신간회 지회에 참가하여 활동한 사람들은 상당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성주현, 『1920년대 천도교의 협동전선론과 신간회 참여와 활동』, 『동학학보』 9권 2호, 2005, 212~220쪽.

의 천도교청년동맹이 합동하여 천도교청우당을 결성했다. 이런 합동이 가능한 것은 최린과 천도교 신파가 압도적 교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폭 양보하여 교직을 신·구 양파에 균분하자는 조건을 제시하고 박인호의 승통기념일을 천도교의 기념일로 하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⁵⁷⁾ 천도교신파는 합동을 통해 본래 신간회를 대신하여 민족적 중심단체로서 자신들의 천도교 청년당-청우당을 위치지우려는 노선을 천도교 전반에 관철시켰다. 한편 이런 합동은 구파의 입장에서도 필연적인 것이었다. 신파가 대폭 양보를 했을 뿐만 아니라, 당사가 신파에 대항하기 위해 자신들이 협동의 대상으로 선정했던 공산주의 세력들이 자신들과 협동하기보다는 고립화 전술, 타격 전술을 통해 자신들을 공격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이었다.⁵⁸⁾

최린은 이렇게 결집된 천도교계의 힘을 바탕으로 1931년 5월, 직접 도쿄로 건너가 일본 정계 인사들을 상대로 정치적 교섭활동을 하였는데, 사실상 조선에서의 자치 실시를 주장하였다. 문제는 조선 지방제도 개정안이 공포되면서는 일제의 지방제도 개정이 조선의회와는 무관하다고 것이 명백히 판명되어, 식민지 조선에서 자치운동을 전개할 만한 객관적 조건이 만들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왜 자치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위한 정치적 교섭을 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용서는 당시 최린과 천도교청년당 지도자들이 원래부터 현실적으로 일제의 지배하에 있는 ‘조선민족 자치’를 구상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일본의 제국주의 질서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국가 단위의 민족주의나 세계질서도 부정했다. 그들은 양자를 모두 비판하는 가운데 ‘세계일가’를 건설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조선민족 자치’를 주장했다. 최린과 청년

57) 성주현, 앞의 책, 194~195쪽.

58) 조규태는 “천도교 구파가 갑자기 신파와 합동하였던 것은, 신파가 박인호의 승통기념일 인정과 교직의 균분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여, 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명분과 실리를 모두 얻을 수 있었던 점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과 관련하여, 1929년의 세계적 경제공황 이후 통제를 강화한 일제의 통치정책에 대한 두려움, 또 1930년 11월 말 이운혁 그룹이 조합청년부 활동을 강조하며, 민족개량주의자뿐만 아니라 좌익민족주의자도 대중에게서 고립시키는 좌·우익민족주의 고립화 전술을 택한 것도 부르주아민족주의 좌파의 하나인 천도교 구파가 신파와 합동한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규태, 『신간회 경성지회의 조직과 활동』, 『국사관논총』 89, 2000, 255쪽.

당에 있어 독립과 자치는 서로 다른 가치의 것이 아닌 ‘세계일가’를 이루기 위한 동일한 가치의 것이었다. 이런 인식의 이면에는 낙관적 세계관과 일본의 시혜적 정책에 대한 기대가 암묵적으로 전제되어 있었다고 한다.⁵⁹⁾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일본 정계의 동향이나 객관적 정세 변화와 크게 상관없이 자치제를 주장하며 이를 실현시키려 하였다. 뒤에서 살펴볼 동아일보 계열이나 여타의 민족주의세력에게 있어 일본 정계의 동향이나 식민정책의 변화는 자치운동을 전개하는데 먼저 이루어져야 할 필수 전제조건이었다. 이에 반해 천도교 신파에게 있어서는 자치운동은 무조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천도교청년당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정치세력 이전에 천도교에 기반한 종교운동 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천도교청년당-천도교청우당과 조선농민사로 대변되는 자신들의 조직적 힘에 대한 자신도 크게 작용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직이 민족협동전선인 신간회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최린은 자치운동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1934년도에도 일본이 조선인의 본국 정치 참여를 허용할 리가 없으므로 일제가 조선통치체제를 바꾼다면 그것은 자치제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⁶⁰⁾ 그리고 일제에 대한 타협의 길로, 더 나아가 친일의 길로 갔다.

2) 기독교계열의 동향과 민족운동의 침체

일제 관련사료에는 천도교신파의 자치운동이 기독교 방면의 민족주의자에도 침투하여 윤치호와 박희도를 중심으로 신우회를 표현단체로서 각파합동전선을 전개하였다고 파악하고 있다.⁶¹⁾ 여러 연구들이 이 자료에 기초해 기독교신우회가 자치운동에 가담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이

59) 정용서, 앞의 논문, 253~261쪽.

60) 이태훈, 앞의 논문, 157쪽.

61) 朝鮮總督府 警務局 編, 朴慶植 解説, 『朝鮮の治安狀況: 昭和5年版』, 不二出版, 1984, 43쪽; 朝鮮總督府 警務局 編, 『最近における朝鮮治安狀況-昭和8・13年』, 巖南堂書店, 1966, 72쪽. 1930년(소화5년)판의 기술내용이 1938년판에 거의 똑같이 기술되어 있다.

해하기 위해서는 1920년대 기독교계열의 민족운동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1920년대 기독교 계열의 주요 세력은 크게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안창호를 지도자로 하는 국외 흥사단과 그 국내기반인 수양동우회세력, 그리고 이와 긴밀히 연결된 조만식으로 대표되는 서북지방 기독교세력이다. 다른 하나는 이승만을 지도자로 하는 국외 동지회와 그 국내 기반인 흥업구락부세력, 그리고 이와 연결된 기호지방 기독교세력이다. 양 세력은 일제하 내내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신간회 창립시에는 흥업구락부와 기호기독교세력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927년 말에는 민족적총역량 집중론에 따라 서북지역 기독교세력과 수양동우회 일부가 신간회에 참여하였다.

기독교의 사회참여를 제시한 1928년 3월 예루살렘국제대회 이후, 조선의 기독교세력들은 농촌부를 설치하는 등 민중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 강화에 나섰다. 1929년 5월에는 수양동우회계열을 중심으로 흥업구락부계열을 포괄하는 기독교신우회가 결성되었다. 최초로 기독교신우회는 전국 각지에 지회를 결성해 신간회에 상응하는 기독교계의 협동전선으로 구상되었지만 실제로는 경성지회를 결성하는데 그쳤다.⁶²⁾ 즉 기독교신우회는 기독교계의 합법적 정치운동조직을 지향하며 출발했지만, 확대에는 실패했다. 조병옥과 정인파 등이 중심이었는데, 주요 간부 상당수는 이미 신간회 본부나 지회에 참여하고 있었다.

1929년 11월에는 수양동우회가 동우회로 개편되었는데, 안창호가 민족유일당운동을 추진하면서 제기한 사회대공주의 이념이 약법 조항으로 삽입되었다.⁶³⁾ 이런 일련의 과정은 민중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는 사회주의자들의 활동 및 반기독교운동에 대한 사회복음에 기반한 기독교계열의 대응과정이며, 동시에 농민을 비롯한 민중에 대한 영향력 강화 과정이었다. 당시 천도교세력이 그러했던 것처럼 기독교세력도 민중운동에 적극 나섰으며, 다른 한편 신간회에 대한 참여와 영향력 강화도 꾀했다.

62) 장규식, 앞의 책, 196~200쪽.

63) 이현주, 앞의 논문, 196~203쪽.

1929년 1월 25일, 신간회는 간사회를 열어 비어있던 총무간사에 오화영과 조병옥을 선임하였다.⁶⁴⁾ 기호 기독교 세력인 흥업구락부와 서북 기독교세력인 수양동우회의 인물이 나란히 선임된 것이 눈에 띈다. 조병옥은 6월 29일 복대표 대회를 새로 결성된 허헌 중앙집행부에서 교육부장에 선임된다. 허헌은 조병옥을 중앙집행위원 후보위원으로 직접 지명하고, 부서장에 임명하여 수양동우회 계열을 배려했다. 흥업구락부원인 박희도도 비슷한 케이스로 출판부장에 임명된다. 이들 모두 기독교신우회 회원이었다. 7월 21일 조병옥은 경성지회의 집행위원장에도 선임되었다.⁶⁵⁾ 조병옥은 신간회 본부 교육부장 자격으로 7월 24일 장성을 시작으로 8월 16일 강진지회까지 전라도지역 23개 지회의 순회강연에 나서기도 했다. 9월 9일에는 중앙상무집행위원으로 보선되었고 교육부장을 겸임했다.⁶⁶⁾ 이렇게 신간회 본부와 경성지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조병옥은 1929년 12월 민중대회사건으로 일제에 구속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다.⁶⁷⁾

1930년 직전의 기독교운동 상황에 대해, 일제 관헌사료의 “자치운동이 기독교 방면의 민족주의자에도 침투하여 윤치호와 박희도를 중심으로 신우회를 표현단체로서 각과합동전선을 전개”하였다는 서술을 검토해보자. 우선 장규식이 이미 지적한대로 윤치호는 기독교신우회원이 아니다. 반면에 조병옥을 비롯한 기독교신우회의 다수인물은 신간회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때문에 이는 일제가 기독교신우회 인사들을 신간회 내부의 합법파로 분류하고, 그것을 민족주의운동 내부의 자치운동 경향으로 한데 묶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기독교신우회가 자치운동의 표현 단체로 활동을 전개하였다는 관헌사료의 주장도 신간회운동에 호응하여 기독교계 민족운동의 전위를 자임하며 출발한 기독교신우회의 노선과도 맞지 않는다.⁶⁸⁾

64) 『조선일보』, 1929. 4. 13; 『동아일보』, 1929. 4. 13.

65) 『조선일보』, 1929. 7. 23; 『동아일보』, 1929. 7. 13.

66) 『조선일보』, 1929. 9. 12.

67) 이 시기 조병옥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이수일, 『1920년대 중후반 조병옥의 민족운동과 현실인식』, 『실학사상연구』 15, 2000, 423~438쪽.

68) 장규식, 앞의 책, 196쪽.

기독신우회와 신간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동우회의 조병옥이 구속된 이후 1930년 기독교계의 동향은 어떠했을까? 기독신우회의 동향부터 살펴보자. 신우회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다. 1930년 5월 30일 제2회 정기대회를 개최하였는데, 기존 수양동우회계열 인물들이 물러나고, 흥업구락부 인물이 이사진에 다수 참가한다. 창립대회 당시 이사진은 수양동우회계열 조병옥, 정인파, 이용설, 이대위, 흥업구락부계열 김인영, 전필순, 기타 이시웅이었다. 제2회 대회 이사진에서 수양동우회계열은 이용설만 남는다. 반면에 흥업구락부계열에서 기존 전필순 외에 박희도, 박연서, 심명섭 이 추가된다. 기타 옥선진, 최상현 이다. 평의원에도 흥업구락부계열이 기존 오화영, 정춘수에 더하여 김수철, 신석구가 추가된다.⁶⁹⁾ 수양동우회 독주에 대한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수양동우회계열 이용설이 이사장으로 있어 신우회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려놓은 것은 아니었다.

신우회 지방지회 결성은 그 시도조차 보이지 않는다. 만약 일제 관헌자료의 기록대로 자치운동을 전개하려고 했다면 어떤 모습이든 적극적 활동을 했어야 했다. 지역마다 지회를 결성한다거나, 각종 행사를 개최해야 했는데, 거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 언론에 알려진 행사가 거의 전무하다시피하다. 장규식은 기독신우회의 이런 부진에 대해 수양동우회계와 흥업구락부계를 정점으로 한 지역·교파·당파 간의 융합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기독교계 내부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보수와 혁신의 대립구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파악했다. 즉 기독교 일반의 개인복음주의노선이 사회복음주의를 내세운 신우회 활동을 강력히 제약했다는 것이다.⁷⁰⁾ 이런 상황은 신우회를 중심으로 자치운동이 전개되었다는 일제 관헌의 기록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준다.

일제 관헌자료에서 윤치호와 함께 기독교계 자치운동의 핵심인물로 지목한 흥업구락부계열의 박희도의 행적을 살펴보자. 당시 중앙보육학교 교장인 박희도는 1929년 7월 신간회 허헌집행부가 구성될 때, 중앙집행위원 겸 출판부장에 선임된다. 1929년 8월 21일에는 신간회 회보 편집위원에 선임된

69) 『기독신보』, 1930. 6. 4; 『조선일보』, 1930. 6. 5.

70) 장규식, 앞의 책, 200~201쪽.

다.⁷¹⁾ 9월 9일에는 신간회 출판부장에서 사임하지만,⁷²⁾ 신간회 본부에서 계속 활동하였다.⁷³⁾ 10월 31일에는 조선어사전 편찬 발기인으로 참여한다.⁷⁴⁾ 1929년 12월 민중대회사건으로 체포되었지만 곧 석방되었다. 앞서 언급한대로 1930년 6월 기독교신우회 2차대회에서는 이사로 선임되었지만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는다. 10월에는 고아들을 위한 조선고아원 설립에 참여하여,⁷⁵⁾ 이사로 선임되었다.⁷⁶⁾ 1931년 1월 24일에는 신간회 경동동지회의 집행위원장에 선임되었다.⁷⁷⁾

박희도는 1929년에서 1931년 초반까지 언론 잡지에 농촌과 농민문제, 산업진흥, 실업, 기독교, 교육, 여성문제 등에 다양한 글을 기고했다. 그러나 정치활동과 관련한 특별한 주장이 없다. 자치제 주장은 전혀 없다. 다만 1931년 1월 1일 신년담화에서는 “중심세력이 없고 권위가 없는 사회에서 무슨 말을 한 대야 소용이 없거니와 아무튼 변천이 없으니까 별다른 소감도 없습니다.”라고⁷⁸⁾ 회의적 시선을 보이고 있다. 그는 민족적 대협동기관 조직의 필요와 가능여부에 대해서도 늦었다고 판단하였다.⁷⁹⁾ 1929년 하반기에서 1931년 신간회 해소 전까지 그의 행적을 언론에 알려진 한에서 살펴보았지만, 자치운동과 관련한 행적은 찾을 길이 없다. 그는 신간회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었고, 교육자로서의 행적만 확인된다. 그가 만약 천도교 신파와 기맥을 통하면서 자치운동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하면 어떠한 행동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찾아지지 않는다.

다음으로 1920년대 후반 조병옥과 함께 수양동우회의 정치세력화를 주도

71) 『동아일보』, 1929. 8. 24.

72) 『조선일보』, 1929. 9. 12.

73) 신간회는 1929년 11월 23일 복대표대회 이후 제2회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박희도는 중앙상무집행위원 전행위원으로 박문희와 한병락과 함께 참가하여, 중앙상무집행위원과 조사부장 출판부장 및 부원 선임에 참여한다. 전행위원 두 사람이 중앙상무집행위원인 것으로 보아 그도 중앙상무집행위원으로 추정된다. 『조선일보』, 1929. 11. 26.

74) 『동아일보』, 1929. 11. 2.

75) 『조선일보』, 1930. 10. 26.

76) 『조선일보』, 1930. 11. 19.

77) 『조선일보』, 1931. 1. 26.

78) 『별건곤』 36, 1931년 1월호.

79) 『해성』 1-1, 1931년 1월호.

하였던 주요한의 행적을 보자. 동아일보 평양지국장이던 주요한은 이광수의 뒤를 이어 1928년 5월부터 1929년 12월까지 동아일보의 편집국장으로 재임한다.⁸⁰⁾ 그는 편집국장이지만 동아일보의 논조나 기사방향에 대한 영향력은 미약했다. 동아일보는 송진우가 사장으로서 경영은 물론 논지에 직접 개입하고 있었다. 주요한은 신간회 허헌집행부 때인 1929년 8월 21일 신간회 회보 편집위원에 선임된다.⁸¹⁾ 1929년 민중대회사건으로 신간회를 비롯한 사회단체 간부들의 체포될 때, 그는 사장 송진우와 함께 체포되었고, 구속·송치되었다. 그렇지만 1930년 1월 6일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 권동진 등과 함께 석방된다. 이후 동아일보의 논설기자로 지내면서 소설과 기행문 등을 연재하였다. 또한 각종 잡지에 국제정세, 문학, 신문, 농촌·농민문제, 기행문 등 다양한 글을 기고한다. 그렇지만 민족운동이라든지 자치운동에 대한 언급은 없다. 실천운동은 물론 동우회활동에도 특별하게 하는 것이 없다. 1930년 11월에는 동우회의 기관지 격인 『동광』의 속간에 편집책임자로 참여한다.⁸²⁾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기독교신우회가 천도교 신파와 연결되어 자치운동을 추진하였다는 일제관헌 기록은 일제가 잘못 파악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독교신우회 주요 관련자들도 신간회에서의 활동 행적만 찾아지지, 자치운동과 관련한 행적은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기독교신우회 활동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점은 자치운동과의 관련성이 아니라, 천도교와 대비되는 기독교 사회운동의 침체된 모습이다. 1930년에서 1931년 신간회 해소기까지 기독교계의 사회운동과 민족운동 자체가 침체상태에 있었다. 이전 시기와 달리 사회참여를 반대하며 개인의 종교적 이해에 안주하는 보수기독교 세력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었다.

80) 동아일보사, 『동아일보사사』 1권, 동아일보사, 1975, 411~413쪽.

81) 『동아일보』, 1929. 8. 24.

82) 『조선일보』, 1930. 11. 6.

3) 동아일보계열의 동향과 합법적 정치운동에서의 후퇴

이제 동아일보의 동향을 살펴보자. 동아일보는 1929년 12월 13일자에서 사이토가 조선 통치상의 제도 개혁에 복안을 가지고 방일했다고 1단 기사로 보도하였다. 12월 15일자에는 사이토 총독이 하미구치 수상 및 마츠다 척무 대신과 조선 자치권 확충 문제에 포부를 피력하고 부면제의 개혁 시행에 양해를 구한 결과 찬성을 얻었다고 보도하고 있다.⁸³⁾ 그런데 이 보도에서 중요한 것은 그 자치권 확충의 내용을 부면제의 개혁으로 보도하고 있는 점이다. 기사는 부면제의 개혁은 총독부의 권한에 의해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토 총독이 귀임하면 총독부에서 구체적 성안을 하여 즉시 제령으로 공포하여 자치권 확충을 단행한다고 보도했다. 12월 16일자에는 사이토가 마츠다 척무 대신과 만나 조선 지방제도개정에 관해 간담한 결과, 도평의회와 부면협의회 의 의결기관화에 대해 협의하였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그 제령의 개정 및 세칙은 내년 봄 초에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⁸⁴⁾ 12월 26일자에는 사이토가 12월 21일 마츠다 척무대신을 방문하여 ‘자치제 확충안’과, ‘재만조선인 보호에 대한 근본적 대책’, ‘조선총독부 관내의 관리임용범위 확충안’ 등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아 가급적 속히 그 실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⁸⁵⁾

1930년 1월 9일자 기사에는 이마무라 다케시 총독부 내무국장을 중심으로 각도 평의회와 부면협의회를 의결기관으로 하는 지방자치제 확충안을 만들고 있으며, 부면협의회는 지정면에만 시행될 것, 그리고 1월 13일의 도지사 회의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할 것이라는 보도했다.⁸⁶⁾ 1월 9일자 사설 『지방자치권 확장안』에서는 사이토가 당초 민의창달, 민심일신을 내세우며 조선에 재임하였을 때와 금일의 논의되는 지방자치권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도·면 등의 기관을 결의기관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종래 도 평의회와 부면 협의회에서 조선인이 감소 추세에 있고,

83) 『동아일보』, 1929. 12. 15.

84) 『동아일보』, 1929. 12. 16.

85) 『동아일보』, 1929. 12. 26.

86) 『동아일보』, 1930. 1. 9.

도지사·부윤·면장의 부결권이 있으며, 직접세 5원 납부자를 선거권자로 하는 규정도 일본인이 적은 보통 면에서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만족할 수 없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의회’ 차원의 자치권에 대해서는 문제에도 삼지 않았기 때문에 민중의 관심은 훨씬 더 멀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⁸⁷⁾

이상의 보도를 보면 동아일보는 총독부가 조선지방의회안을 만들고, 일본 본국과 협의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처음부터 지방행정제도 개정으로 총독부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으며, 중앙의회 차원의 자치권 문제를 다루고 있지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없다는 점을 내비치고 있었다. 이는 그들의 당시 활동이 총독부의 자치 정책 모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⁸⁸⁾

1930년 3월 11일, 조선총독부가 ‘조선지방자치권 확장안’을 일본 각의에 제출하면서 지방행정제도 개정의 구체적 내용이 일반에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3월 13일 이를 강력히 비판하는 관련 사실을 게재하였다. 사실은 당국자는 지방자치제도 확장안이 조선 통치상의 일대 개혁이라고 하지만, “오인은 원래 조선문제에 관하여 독자의 견해가 있으며”, 이번에 제출된 “소위 확장안의 내용을 보면 너무 관료적이며 실질적으로 공허함에 一驚”을 금할 수 없다면서, “선거라 하되 선거의 허명뿐이요 그 실이 없으며, 결의기관이라 하되 결의의 형식뿐이요, 질이 없는木偶적 괴물을 작성하였으니 민중을 우롱”했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또한 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하였다. 첫째, 부회와 읍회, 도회를 결의기관으로 한다면서 의장을 도지사와 부윤으로 지정하고, 소위 감독권으로 만능적 권리를 부여한 것은 의결기관의 존재 필요를 없게 하는 것으로 의결기관은 ‘완전한 死物’인 것이 명약관하하다고 비판했다. 둘째, 도회위원의 1/3을 관선으로 임명하고, 대다수의 보통면에는 자문기관으로 면협의회 존치한 것은 지방자치의 확장이 질과 양에서 이름에

87) 『地方自治權 擴張案』, 『동아일보』, 1930. 1. 9.

88) 윤덕영, 앞의 논문, 2011b, 379쪽.

불과한 것이라 비판했다. 또한 현재 국세 5원의 선거권 자격 제한을 그대로 둔 것은 극단의 제한선거를 존속시키겠다는 것은 대부분의 조선민중을 배제하는 유명무실의 눈가림 정책이고 민중우롱책이라고 강력히 비판하였다.⁸⁹⁾

다른 기사에서는 일제의 지방제도 개정안이 실시되면 조선인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인가를 분석하였다. 우선 부제에 대해 “현행 학교조합(일본측), 학교비평의회(조선인측)까지 병합하여 삼단체가 하나”가 된다면서, 부의원 또는 지정면협의회의(읍회)의 유권자(세금 5원 이상 납부자)가 일본인이 조선인보다 많기 때문에 부회와 읍회는 일본인 우의가 확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실제 운영에서도 현행의 자문기관인 부협의회에서도 예산안의 문제 지적을 하면 부윤이 이를 수정하여 집행하기 때문에 앞으로 구성될 부회도 그 실제 내용에서 현재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도회도 도지사가 임명하는 관선의원이 1/3이고, 의결기관이 되었지만 당국이 의결의 재의를 명령하고, 해산할 수 있어 실제 권한이 없다고 평가하였다.⁹⁰⁾

이후 지방제도개정과 관련한 기사는 동아일보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만약 그들이 지방제도개정과 관련한 자치운동을 전개하려고 한다면, 창간 이래 그들의 보도태도를 놓고 볼 때 대대적인 관련 기사나 논설을 게재했을 것인데, 거의 기사가 없다. 이에 대한 그들의 관심이 멀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기사가 나오는 것은 지방행정제도 개정안이 공포되는 11월에 들어서였다. 그들은 지방제도 개정안이 발표되기 전인 1930년 11월부터 일제의 지방행정제도 개정안의 문제점을 다시금 제기하였다.⁹¹⁾ 지방제도 개정안이 발표되자 이를 소개하는 기사와 함께 조선인 유권자가 일본인 유권자의 60% 밖에 되지 않는다는 자세한 통계표를 같이 보도함으로써 개정된 지방제도의 부당함을 적극 알렸다.⁹²⁾ 1931년 1월 29일자 사설에서는 각부 유권자조사회

89) 「소위 지방자치확장안-관료식 발취-」, 『동아일보』, 1930. 3. 13.

90) 『동아일보』, 1930. 3. 13.

91) 「지방자치제실시로 일본유권자 배증-1천2백명이나 돼 주인 바뀔 평양부」; 「자랑튼 우세도 일거에 전복-소위 자치제의 「효능」은 일본 십칠, 조선 십삼」, 『동아일보』, 1930. 11. 28.

92) 「조선인유권자 일본인의 6할 약-부회의원선거유권자 사만칠천 회 이만팔천, 개정 후 차이 현격」,

의 조사 결과, 경성부의회의 총 유권자 19,500여 명 중, 일본인 유권자는 14,300여 명이고, 조선인 유권자는 5,200여 명이라는 조사 결과를 얻었다고 하면서, 이는 동아일보 12월 2일자의 통계에서 예상한 60% 수준보다도 훨씬 더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은 이번 조사 결과로 일본인 유권자 수의 점증이 예상된다면서 이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것이니 “새삼스러이 무엇을 괴이”하게 여기겠느냐고 조소하였다. 동아일보는 “新制의 자치제가 많은 감독권, 많은 제재권이 있어 …… 자치라는 實이 缺”함을 말하였다고 하면서 “유권자수에도 조선인이 일본인에 대등치 못한 제도를 만든 지방 자치제에 대하여서는, 오인은 더구나 관심이 적어짐을 금치 못한다.”라고 주장했다.⁹³⁾

동아일보 계열은 일제 지방제도 개정의 문제점과 한계를 이미 명확히 알고 있었다. 일본 정계의 변동 없이 실시되는 조선총독부의 자치정책이 얼마나 기만적이고 한계가 많은 것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다. 더군다나 조선지방의회도 무산되고 지방행정제도 개선으로 귀결된 식민통치의 기만적 행태를 보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들어갈 만큼 한심하거나, 총독권력 하의 허울뿐인 하위 권력을 지향하는 정치세력은 더더욱 아니었다.⁹⁴⁾

그리고 이는 동아일보 계열뿐만 아니라 일제하 민족운동을 전개하는 대부분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도 마찬가지였다. 조선민족운동세력 대부분은 1910년대 이래 근대 서구 사상의 훈련을 받은 신지식층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⁹⁵⁾ 세계정세의 변화와 새로운 신사상의 사조에 대해 기본적 지식과 소양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당시 민족 최고의 엘리트층 이었다.⁹⁶⁾ 각자의 사상과 이념에 따라 일본 본국에서 전개되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사상 및 운동을

『동아일보』, 1930. 12. 2.

93) 윤덕영, 앞의 논문, 2011b, 385쪽.

94) 윤덕영, 앞의 논문, 2011b, 386쪽.

95) 신지식층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류시현, 「1910~20년대 일본 유학출신 지식인의 국제 정세 및 일본인식」, 『한국사학보』 7, 1999, 고려사학회, 284~292쪽; 임경석, 「20세기초 국제질서의 재편과 한국 신지식층의 대응-사회주의 지식인의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43,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3, 3~7쪽; 윤덕영, 「일제하·해방직후 동아일보 계열의 민족운동과 국가건설노선」, 연세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2~6쪽.

96) 윤덕영, 앞의 논문, 2011b, 386쪽.

공유하는 세력들이었다. 그들은 식민지 조선의 중요 정책이 총독부가 아닌 일본 본국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으며, 때문에 그들의 시야는 총독부가 아닌 일본 본국 정계에 향해 있었다. 중일전쟁이후 동아일보가 일제가 굴종하기 이전까지 동아일보의 1면은 거의 대부분 국제면이었으며, 일본 정계 동향도 항상 자세히 보도되고 있었다. 때문에 일본의 정치세력 및 사회운동세력 수준에서 이들을 보고 판단해야지, 식민지의 민족운동자라고 낮은 수준에 있다고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편 일부 연구에서는 일제 관헌사료를 인용하여 동아일보가 1930년 여름에서 가을까지 지방발전좌담회를 개최하여 자치제 실시에 대비하여 지방사회의 유력자 포섭에 나섰다라고 주장했다.⁹⁷⁾ 더 나아가 다른 연구에서는 1930년 여름에서 가을까지 전국적으로 진행된 좌담회에는 현직 지방자문기관의 협의회원, 학교평의원, 의사, 지주, 자본가 등 지역유지자세력들이 대거 참여하였는데, 이들은 지방선거에 참여할 예비후보군으로, 동아일보는 사실상 선거유세라 할 수 있는 순회좌담회를 통해 지방선거 국면에 개입하여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⁹⁸⁾

이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자. 이 좌담회는 1930년 여름과 가을이 아니라, 1930년 9월 16일 평양을 시작으로 1931년 4월 4일 군산을 마지막으로 전국 31개 도시에서 동아일보 지국 주최로 개최되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동아일보 1930년 9월 19일자부터 1931년 4월 23일자까지 157회에 걸쳐 비교적 상세히 보도되었다.

참여자료를 보면 제1회 평양좌담회에서는 신간회 평양지회장 조만식, 송실전문 문과장 채필근, 광성고보교장 김득수, 변호사 한근조, 평양고무공업 사장 김동완, 평양금성병원장 정세운, 평양상공회장 오윤선 등이 참석했다.⁹⁹⁾ 모두 서북기독교세력과 그와 연결된 인물들이다. 이들 중 1931년 지방선거에 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김성업 동아일보 평양지국장 사회로 진행된 좌

97) 박찬승, 앞의 책, 346쪽.

98) 이태훈, 앞의 논문, 151쪽.

99) 『동아일보』, 1930. 9. 19.

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자. 가장 먼저 조선인 본위의 금융기관인 은행 설립 문제가 다루어졌다. 다음으로는 평양의 조선인 산업현황 문제, 평양의 사립 중등학교 증설 및 운영 문제, 평양 유흥도시 방지책, 위생사상 보급문제, 전기와 수도문제, 여론을 형성할 조직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조만식은 사람을 양성할 사상문제연구회 결성을 주장했다.¹⁰⁰⁾ 부회나 읍회, 도회는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주장도 없었다.

좌담회가 개최된 다른 도시들의 참석자들도 지역의 신간회 지회장과 관련자, 지역의 민족운동가들이 다수 참여하였다. 물론 지역의 유지들과 산업가들도 적지 않게 참여했다. 논의의 내용도 각 도시의 조선인 산업을 비롯한 지역 상황과 현안들이 논의되었지만, 역시 부회나 읍회, 도회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이를 이용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역시 없었다. 때문에 이를 지방선거에 참여할 예비후보군들이나 자치선거 참여자의 선거유세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단 그 시점이 민족운동 내 각 세력이 자신들의 대중적, 정치적, 전국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시기였다는 것이 확인될 필요가 있다. 농민을 비롯한 각 부문운동을 가장 정력적으로 전개하던 천도교세력은 물론이고, 기독교세력들도 대중적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었다. 사회주의세력들은 ‘노동자·농민속으로’이란 구호아래 노동자 농민에 기초한 농민조합 및 노동조합운동, 당재건운동을 전개하였다. 즉 식민지 노동자 농민 대중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족운동 내 각 세력이 각개 약진하던 시기였다.

좌담회를 주최한 동아일보 세력들의 행동도 이런 영향력 확대 시도와 관련이 있다. 동아일보 세력은 자신들의 대중적, 전국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1928년 문맹퇴치운동, 1931년 이래 브나로드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동아일보 세력들은 부르주아 자산계급층에 계급적 근거가 있고, 1920년대 전반 이래 합법적 정치운동을 추진하였다. 그들은 좌담회를 통해서 각 지역의 민

100) 『동아일보』, 1930. 9. 24.

죽은동가들과 지역의 유지층에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다. 합법운동을 추구하던 그들의 속성상 그들의 공략대상은 일제가 포섭하려고 했던 지역 유력자층과 중첩된다.

송진우를 중심으로 한 동아일보 주도세력은 1922년 초부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비롯한 제반 민주주의적 권리에 대한 정치투쟁과 정치운동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고, 조직적 방침으로 '민족적 중심세력 형성'론을 주장하였다.¹⁰¹⁾ 그리고 이는 1920년대 중반 '민족적 중심단체' 건설 주장으로 보다 구체화되었다. 그들은 이를 통해 합법적 대중정치론을 발전시키고 있었다.¹⁰²⁾ 주로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이는 민족주의 세력 전반의 기류 및 정서와 관련된 것이었다. 민족주의 세력은 일본과 중국의 정세 변동을 살펴보면서 이를 배경으로 구체적 운동 형태를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였다.¹⁰³⁾ 그 결과 합법적 정치운동론은 1926년에 이르러서는 민족주의 세력에게 일반화되기에 이르며, 1927년 신간회 창립으로 구체화되었다.¹⁰⁴⁾ 당시 동아일보계열의 핵심인물인 송진우가 일제에 구속되면서 신간회 창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주도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지만 신간회 창립은 그들이 1920년대 초반 이래 주장해왔던 민족적 중심단체 건설, 합법적 정치단체 건설 주장과 일정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었다.

동아일보 주도세력의 민족운동 기본 입장은 광범한 대중을 민족운동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합법적 정치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일본 무산정당의 진출에 따라 일본 정세가 변화하고, 중국 국민혁명에 따라 중국정세가 변화하면서 그와 연관해 식민지 조선정책이 변화하여 조선에서 자치제가 실행되면, 그들은 자치 국면에 적극 대응하려고 했다. 즉 정세 변화에 따라

101) 윤덕영, 『1920년대 전반 동아일보 계열의 정치운동 구상과 '민족적 중심세력론'』, 『역사문제연구』 24, 2010, 15~42쪽.

102) 윤덕영, 『1920년대 중반 민족주의 세력의 정세인식과 합법적 정치운동의 전망』, 『한국근현대사연구』 53, 2010, 82~108쪽.

103) 일본의 정계변화와 중국 국민당의 북벌로 초래된 국제정세의 변동과 관련하여 신간회 창립의 전사를 이루는 민족주의 세력의 민족적 중심단체 건설 움직임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윤덕영, 『1926년 민족주의 세력의 정세 인식과 '민족적 중심단체' 결성 모색 - '연정회 부활' 계획에 대한 재해석』, 『동방학지』 152, 2010.

104) 윤덕영, 앞의 논문, 2010a, 119쪽.

그들의 합법적 정치운동은 자치운동이 될 수도 있지만, 정세가 변화하지 않으면 자치운동의 모색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국제적 연대를 지향하는 사회주의가 전개되었지만, 여전히 세계는 민족 단위로 움직이고, 세계대세는 민족자결에 있기 때문에 조선은 민족국가로서 독립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지향하는 목표였다. 자치는 일본 정세의 변동에 따라 주어진 상황이고, 아일랜드 신페인당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를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다.

동아일보 주도세력들에게 민족운동의 정치조직은 민중의 자각 정도도 낮고 민중의 단결력도 미흡하고, 민족 독립을 수행할 수 있는 군대도 만들 수 없는 현실 상황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현실의 민족운동의 정치조직은 일본에서의 무산정당이 의회에 진출하여 조선 정책이 바뀌어질 때, 더 나아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크게 변동될 때를 대비하여, 민중의 정치적 '자각'과 '민족적 훈련'을 담당하는 실력양성, 미래를 위한 준비 조직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그들은 아무런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일제와 직접적으로 대립하고 싸우는 것을 무모한 것으로 보았다. 합법운동 조직을 모색하는 이상 그들에게 있어 타협과 비타협의 문제는 선차적인 것이 아니었다. 합법을 위해 독립을 포기하고 일제와 타협한다면 큰 문제이지만, '대중의 자각'과 '민족적 훈련'을 목표로 하는 민족운동 조직을 조직하는 한, 합법적 영역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배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타협과 협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았다.¹⁰⁵⁾ 그들은 신간회가 '대중의 자각'과 '민족적 훈련'을 목표로 하는 민족운동의 합법적 정치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일제와의 타협과 협상을 아무런 담보 없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개량화와 타협화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었다. 일제의 회유와 위협에 타협하지 않고 개량화하지 않을 수 있는 담보에 대한 고려, 즉 핵심조직의 준비 및 핵심 준비 구성원들 간의 사상적·

105) 윤덕영, 앞의 논문, 2010a, 151쪽.

운동노선상의 이념적 공유와 행동의 통일이 고려되지 않을 때 합법적 영역에의 매몰은 개량화와 일제에 대한 타협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다. 그들이 아일랜드 신폐인당을 긍정 평가했음에도, 합법과 비합법, 의회투쟁과 무장투쟁을 배합한 신폐인당과 결정적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¹⁰⁶⁾ 이들이 해외 민족운동세력과 연계하려고 한 시도는 없었다.

동아일보 주도세력은 최린을 비롯한 신과 주도세력과 인식을 같이 하는 점과 달리하는 점이 분명했다. 그들은 합법적 정치운동이 광범한 대중을 동원하는데 유효한 수단이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조선의회나 조선지방의회 같은 자치제도 조건이 되면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들 모두는 타협과 대결의 경계선을 걷고 있었다.

그럼에도 최린과 천도교신과 중심인물들은 정세의 변화에 크게 구애됨이 없이 천도교 조직의 힘을 믿고 자치운동을 그대로 밀고 나갔다. 반면에 동아일보 주도세력은 일본 정계의 변화와 조선정책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정세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운동 노선과 방향을 수정하여 갔다. 제2차 중의원 보통선거에서 기존 지배정당들이 압승하고, 무산정당이 분열하여 지리멸렬한 상황은 식민지 조선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았다. 또한 일제의 1930년 지방행정제도 개정은 자치의회를 비롯한 합법적 정치운동의 공간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인식했다. 당시 송진우는 “본래 조선의 정치라 하면 일본의 정치이겠지요. 그러면 조선의 정치는 일본의 정치를 따러가는 것 밖에 더 있겠습니까?”라고¹⁰⁷⁾ 하였는데, 이는 그들의 인식을 잘 반영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그들은 합법적 정치운동에서 사실상 후퇴했으며, 일제와의 타협의 가능성도 멀어졌다. 이렇게 해서 1920년대 중반 이래 진행되어 온 민족주의 세력의 합법적 정치운동 노선과 활동도 분화하게 된다.

106) 윤덕영, 앞의 논문, 2010a, 152쪽.

107) 『조선은 어데로 가나?』, 『별건곤』 34, 1930. 11.

4) 신간회 김병로 중앙집행부 체제의 등장과 성격

1929년 6월 북대표대회를 통해 허헌을 집행위원장으로 하는 새로운 신간회 중앙집행부가 꾸려졌다. 당시 선임된 중앙상무집행위원은 다음과 같다. 김동선, 김명동, 김장환, 김항규, 박문희, 안철수, 이주연, 이춘숙, 임서봉, 조치기, 한상준, 홍명희 총 12명이다. 허헌 집행위원장하의 실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서무부장 황상규, 부원 이주연·김세진, 재무부장 김병로, 부원 김동선, 조직부장 김항규, 부원 임서봉, 선전부장 이종린, 부원 조치기·안철수, 조사부장 이춘숙, 부원 이주연, 교육부장 조병옥, 부원 박문희, 출판부장 박희도, 부원 안철수 이다.¹⁰⁸⁾ 중앙검사위원회에는 권동진이, 상무검사위원회에 이항발과 조헌영이 선임되었다.¹⁰⁹⁾

이중 사회주의자는 중앙상무집행위원 중 박문희, 이주연, 조치기, 한상준 이었고, 각 부장과 부원 중에는 박문희, 이주연, 조치기, 상무검사위원회에 이항발이 해당된다. 그러나 이주연을 제외하고는 이들 대부분 사회주의운동의 현장과 거리를 두고 있다. 허헌 중앙집행부는 중앙집행위원과 검사위원회에 사회주의자들이 대거 진출하였지만, 실제 조직을 운영하는 중앙상무집행위원과 각 부서장은 민족주의자들이 거의 다수를 점하였다. 허헌 자신도 이 당시는 민족주의세력과 보다 가까운 명망가였다.¹¹⁰⁾ 7월 25일에 이종린이 선전부장을 사임하고 대신해 김장환이 선임되었다.¹¹¹⁾ 9월 9일에는 조병옥이 중앙상무집행위원으로 보선되었고 교육부장을 겸임했다. 이관용이 중앙상무집행위원에서, 박희도가 출판부장에서 각각 사임했다.¹¹²⁾ 11월 24일에는 중앙상무집행위원에 한병락과 정종명을 보선하였으며, 중앙상무집행위원을 사임했던 이관용이 조사부장에, 홍명희가 출판부장에 선임되었다. 그리고 재정부원에 박명환, 조사부원에 김진옥을 추가 선임하였다.¹¹³⁾

108) 『조선일보』, 1929. 7. 6; 『동아일보』, 1929. 7. 6.

109) 『동아일보』, 1929. 7. 26.

110) 윤희정, 『북대표대회 전후 신간회 본부의 재편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3, 2018, 69쪽.

111) 『동아일보』, 1929. 7. 27.

112) 『조선일보』, 1929. 9. 12.

허헌 집행부는 광주학생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민중대회 모의사건으로 1929년 12월 13일부터 간부 상당수가 체포되었다. 일경은 신간회뿐만 아니라 주요 사회단체 인물들의 검거에 나서, 체포된 인원은 70여 명을 넘었다. 그렇지만 대부분 곧 석방되었고, 12월 24일 허헌, 홍명희, 조병옥, 이관용, 이원혁, 김무삼, 권동진, 한용운, 주요한, 김항규, 손재기 11인은 구속 상태로, 송진우, 안재홍, 이시복은 불구속 상태로 검사국에 송치되었다.¹¹⁴⁾ 구속된 11인 중에서 1930년 1월 6일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 보안법이 아닌 제령위반으로 예심에 회부되는 사람은 허헌, 홍명희, 조병옥, 이관용, 이원혁, 김무삼의 6인이었다. 권동진, 한용운, 주요한, 김항규, 손재기는 석방되었다.¹¹⁵⁾

구속된 6인중 신간회 관련자는 허헌 집행위원장, 출판부장 홍명희, 교육부장 조병옥, 조사부장 이관용 총 4명이었다. 여기에 서기장 겸 서무부장인 황상규가 고문 후유증으로 활동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집행부 8명 중 5명의 유고가 생긴 것이다. 때문에 집행부가 타격을 받은 것은 분명하다. 반면에 신간회의 의결기관인 중앙상무집행위원 14명 중에는 조병옥만 구속되었다. 이들을 제외하고 기존 중앙상무집행위원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런 조직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 신간회 중앙본부는 집행부가 아닌 중앙상무집행위원회 체제로 운영되었다.

1930년 2월 16일 신간회 본부는 중앙상무집행위원회를 열고 천도교 신파의 신간회 입회를 김병로와 채규항이 권유하기로 결정한다.¹¹⁶⁾ 김병로 단독 결정과 접촉이 아니라 중앙상무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천도교 신파와의 협력을 결정한 것이다. 다만 사전 협의를 통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권유였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천도교 신파는 이를 거부한다. 기존 일부 연구들에서는 이 결정이 신간회가 천도교 신파의 타협적 자치운동노선으로의 경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간단히 볼 수 없다.

113) 『동아일보』, 1929. 11. 26.

114) 『조선일보』, 1929. 12. 28.

115) 『조선일보』, 1930. 1. 8.

116) 『동아일보』, 1930. 2. 21.

우선 1920년대 중반 민족주의세력 내에서 민족적 중심단체 결성 주장이 제기될 때부터, 그리고 신간회 창립 때부터 천도교 신파와 협력 여부는 늘 뜨거운 감자였다. 당시 민족운동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력과 규모를 가진 천도교 신파와 청년당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동아일보계열을 비롯해서 민족주의세력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심지어 조공을 비롯한 사회주의세력들도 천도교신파와의 협력을 모색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종린을 비롯한 천도교 구파, 그와 가까운 안재홍을 비롯한 일부 민족주의세력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신간회의 결정은 이들이 신간회 본부에서 밀려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신간회 경성지회로 근거를 옮긴다.¹¹⁷⁾

다음으로 권유하는 교섭위원으로 김병로 외에 채규항이 선출된 것도 지나쳐볼 수 없다.¹¹⁸⁾ 그는 1926년 조공에 입당하였다가 검거되었고, 2년이 넘는 옥살이 후에 1929년 1월 출옥하였다. 그는 조선노동총동맹 중앙집행위원으로 있으면서, 1929년 11월에는 김단아가 지도한 ‘조선공산당조직준비위원회’ 산하 야체이카의 책임자로 활동하였다. 1930년 1월에는 권오직 및 박민영과 함께 조직을 당재건 조직을 이끌면서, 부산방적 동맹파업을 선동하는 활동을 하였고, 2월에는 3·1운동 11주년을 기리는 격문을 배포하기도 했다.¹¹⁹⁾ 곧 채규항은 당시에 지하에서 조공재건운동에 적극 참여하면서도, 외부적으로는 신간회 본부에서 활동하던 인물이었다.

기존 연구들과 같이 천도교 신파에 대한 신간회 입회 권유가 최린이 주도한 일제와 타협한 자치노선으로 경사한 것이라고 규정한다면, 채규항의 활동은 이런 타협운동에 앞장선 것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김단아가 지도한 화요파 계열의 당재건운동이 일제에 타협한 운동과 야합한 것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를 채규항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할

117) 이종린은 1930년 4월 12일 개최된 신간회 경성지회 임시대회에서 구속된 조병옥 뒤를 이어 경성지회 집행위원장에 선임된다. 『조선일보』, 1930. 4. 14.

118) 채규항이 중앙상무집행위원이라는 자료도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다만 노동총동맹과 함께 신간회 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 같기는 하다. 『삼천리』 5, 1930. 4.

119) 최규진, 『조선공산당 재건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100~103쪽.

수도 없다. 당재건운동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채규항에 대한 재건운동자 내부의 비판과 공격은 확인되지 않는다. 당재건조직의 지도적 인물이었던 채규항은 1930년 3월초 3·1절 격문사건과 관련하여 체포되었다가, 당재건사건이 발각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1931년 10월에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다.¹²⁰⁾ 이런 민족운동가를 일제에 타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관계를 놓고 보면 신간회 지도부의 천도교 신파 입회 권유를 타협적 자치노선으로 경사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김병로를 중심으로 한 당시 신간회 중앙상무집행위원회가 일제의 탄압으로 위축된 신간회의 활동에 활기를 부여하기 위해, 이종린 등 천도교 구파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강력한 민족운동세력이었던 천도교 신파를 끌어 들이기 위해, 취한 행위라 할 수 있다.

1930년 11월 9일 신간회는 ‘전체대회대행 제3회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김병로를 중앙집행위원장으로 선출하고, 40명의 중앙집행위원을 선임하였다.¹²¹⁾ 16일에는 중앙검사위원회를 개최해 양봉근을 중앙검사위원장에, 유진태와 현동환을 중앙상무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다.¹²²⁾ 19일에는 제4회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서기장 겸 서무부장에 김항규, 회계 겸 재무부장에 김용기, 조사부장에 이항발, 조직부장에 서정희, 출판부장에 백관수, 중앙상무집행위원회에 이항발, 이관구, 서정희, 백관수, 김상규, 한병락을 선임하였다.¹²³⁾ 신문에는 이항발, 이관구, 서정희, 이주연, 김상규, 한병락이 중앙상무집행위원으로 선임되었다고 보도되었다.¹²⁴⁾ 일제 관헌자료는 김병로 이하 대부분이 온건파(합법파)라고 파악하였다.¹²⁵⁾ 실제 그러한가?

신임 중앙 집행부에서 민족주의세력은 동아일보 주도세력과 가까운 김병

120) 『조선일보』, 1931. 10. 29.

121) 『동아일보』, 1930. 11. 11; 『조선일보』, 1930. 11. 11.

122) 『동아일보』, 1930. 11. 19.

123) 경기도 경찰부, 『治安狀況』 1931. 박경식 편, 『조선문제자료총서』 6권, 319쪽.

124) 『조선일보』, 1930. 11. 21.

125) 경기도 경찰부, 『治安狀況』 1931. 박경식 편, 『조선문제자료총서』 6권, 314쪽.

로와 백관수, 흥업구락부계의 이관구, 물산장려회의 김용기, 민흥회 출신의 김항규와 김상규 등이다. 사회주의세력은 ‘사회주의 우익’ 또는 ‘좌익사회민주주의자’라 불리는 이항발, 서정희, 여기에 단천지역 사회주의운동을 이끌던 이주연, 정평지역 사회주의자로서 조선공산당조직준비위원회에 가담했던 한병락 등이다.

당시 ‘사회주의 우익’ 또는 ‘좌익 사회민주주의자’라 불리는 사람들은 신간회 본부의 서정희, 이항발, 한병락, 박문희 등 외에도 김재한, 허일 등 청층의 간부들도 있었다. 이들은 당면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는 민중의 생존권 확보, 정치적으로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정치적 자유 획득과 공민권 획득 운동 전개 등을 주장하면서 그를 위해 합법적 활동을 중심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 그들은 민중이 전면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비합법적인 종파주의에 흐르지 말고 합법적 활동으로써 광범히 대중과 접근”해야 하며, 합법적 활동이 “대중과의 관계를 가장 긴밀히 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활동임으로 우리는 협동적 투쟁의 기본 전술”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²⁶⁾

한편 당재건운동을 전개하던 사회주의자들도 일부 참여하였다. 단천농민운동의 지도자인 이주연은 허헌 집행부 때부터 중앙상무집행위원 및 서무부원으로 활동한 공산주의자였다. 그렇지만 합법운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자였으며, 신간회 내 민족주의자들과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다. 1930년 초 김병로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가장 핵심적 위치에서 김병로와 협력하여 활동하였다. 특히 최린과 접촉하면서 자치운동 추진의 의혹을 받아 공개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박문희를 공개 옹호하기도 했다. 다만 1931년에 들어서는 단천 농민조합 운동을 적색농민조합운동으로 전환시키고, 신간회 해소를 주장하는 글을 발표한다. 한병락은 당재건 야체이카 소속으로 1930년 2월 일경에 체포되어 검사국에 송치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4월 30일 석방되었다.¹²⁷⁾ 그 후에도 조선농촌총동맹과 신간회 본부에서 계속 활동하였는데, 11월 전체대회대행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주연 등과 함께 주도

126) KH生, 『조선은 어데로 가나? -사회활동』, 『별건곤』 34, 1930. 11, 8쪽.

127) 『조선일보』, 1930. 5. 2.

적으로 활동하였다.

1930년 11월 전체대회대행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선출된 신간회 중앙집행부는 허헌 중앙집행부와 비교해서 사실 그 인적 구성과 조직 성격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민족주의자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지만, 일부 사회주의자들도 적극 참여했다. 그들 중에는 좌익사민주의자라 불리는 인물들도 있었고, 당재건운동과 혁명적 농노조운동을 전개하던 인물들도 있었다. 이들 사회주의자들 사이에는 합법적 정치운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 인적 구성과 조직 성격에서 허헌 중앙집행부는 비타협파이고 김병로 중앙집행부는 타협파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당시 사회주의자들은 천도교 구파나 신파에 대해 큰 구분을 두지 않았다. 1926년 강달영 책임비서 하 조공 때부터 천도교와의 협력을 모색하기도 했고, 천도교 신파를 일괄 배제하지 않았다. 한편 1930년 전후로 사회주의자들, 특히 좌파인 공산계열의 사람들은 대부분 당재건운동과 그 기반인 혁명적 농노조운동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신간회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코민테른의 12월테제나 그 직후의 정책에도 신간회에 대한 구체적 지침은 없었다. 각 그룹과 개인에 따라 신간회에 대한 입장이 차이가 있었다.

1930년 김병로 집행부체제의 신간회는 실제 활동양상에서 일제의 강력한 탄압 때문에 위축되고 일제와 직접적 대결을 자제하기는 했지만, 합법운동과 온건노선에만 매몰된 것은 아니었다. 민중대회사건 때문에 허헌 중앙집행부의 투쟁성이 과도하게 평가되고 있지만, 그 사건조차도 윤호정이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본부 지도부 기본적인 활동방식 범위 하에 있었다. 민중대회는 광주학생사건에 대한 신간회의 여론 형성 활동의 일환이었고, 이를 통해 본부 지도부의 민족주의세력의 대표성을 드러내고자 했다.¹²⁸⁾ 김병로체제는 민중대회사건이후 더욱 심해진 일제 탄압에 어쩔 수없이 직접적 투쟁을 자제할 수밖에 없었다.

허헌 중앙집행부 때와 차이가 있다면 민족주의자들 중에서 천도교신파에

128) 윤호정, 앞의 박사학위논문, 172~173쪽.

적극 반대하던 이종린 등 천도교구과의 일부 인물과 그들과 가까운 인물들이 상임간부들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아직은 민족운동세력의 일원으로 남아있던 천도교 신파와의 이루어질 수 없는 교섭에 나섰다는 점이다. 배제된 이들은 신간회 경성지회로 결집하였으며, 본부 간부를 불신임하는 등 중앙본부와 대립을 격화시켰다.

4. 맺음말

이상에서 1930년 전후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정세 변화를 일본 제2차 중의원 보통선거와 식민지 조선의 제2차 지방제도 개정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당시의 민족주의 세력들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판단하고 있었는가, 이런 정세변화가 그들의 운동 전개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당시가 천도교 및 기독교세력, 동아일보세력, 신간회 등의 광범한 세력이 관련된 자치운동이 전개될 수 없었던 정세라는 것을 해명하였다. 그리고 천도교 및 기독교 세력, 동아일보세력의 동향과 주장을 살펴 보면서 이들의 활동내용과 성격, 합법적 정치운동에서의 분화과정을 해명하였다. 이를 통해 이들 활동을 일제의 지원을 받는 타협적 자치운동과 관련시키는 주장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신하여 1930년 전후 천도교와 기독교계열, 동아일보계열 등 주요 민족주의세력의 실제 활동 양상과 주장을 복원하였고, 1930년 신간회 김병로 중앙집행부 조직의 내용과 성격을 해명하였다.

20세기 전반 동아시아는 제국의 시대였다. 일본 제국의 큰 범위와 변동 속에서 식민지조선은 위치 지워지고 움직였다. 제국사의 틀을 가지고 식민지를 바라보아야 할 이유이다. 일본은 1920년대 정당정치시대가 도래했음에도 정당 정치세력과 자유주의체제가 일본정치의 전반을 장악하지 못했다. 일본 정치구조는 메이지시대 이래 일본 특유의 천황제 권력체제 하에서 기존의 특권세력이 의회제와 정당 정치체제를 받아들여 자기 변신을 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 정치세력이 기존의 특권세력 및 천황제와 타협한 것이었다. 또한 정당세력들이 잡은 정치권력도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 여전히 군부는 사실상 내각의 통제 밖에 존재했다.

일본 천황제 권력체계 특유의 권력분립체계 속에서 정당정치세력이 조선 식민정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었다. 현지 총독의 권한도 제한적이였다. 식민지 중의원 참정권부여나 자치제 실시에 대해 일본 지배권력 핵심부, 즉 특권세력들과 군부세력, 정당정치 핵심세력들은 부정적이였다. 이런 정책들이 식민지 지배의 안정보다는 일본제국의 정국을 흔들며 제국의 이해를 위협한다고 보았다. 식민지 조선이 일본의 안보·국방상 갖는 전략적 위치, 군부의 반발, 특권세력의 거부감, 우경화하는 국민정서 등에 따라 식민지 조선에 대한 자치제 주장은 갈수록 힘을 잃어갔다. 본국관료로 진출할 수 없던 대부분 조선총독부 토착 일본인 관료들은 자치제 실시를 원했지만, 그들의 정치적 힘과 능력은 미약했다. 사이토총독은 그들을 지원하려 했지만 일본 권력핵심부의 식민정책을 바꿀 수도, 바꿀 의지도 크게 없었다.

1930년 일제의 식민지 지방제도 2차 개정은 이런 제국과 식민지 상황을 반영한 결과물이었다. 조선지방의회 설치의 기대가 있었고, 사이토 총독과 총독부관료들도 기만적 형태이나마 이를 만들기도 했지만, 일본 본국 권력세력에는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보통선거를 하는 일본과는 달리 선거권이 극히 제한된 도·부·읍의 의결기관화만 이루어졌다. 그것도 식민 관료인 도지사와 부윤, 읍장이 의장으로서 감독권을 비롯한 절대적 권한을 가졌다. 일본 본국 권력구조와 정치상황을 놓고 볼 때 이는 사실 필연적 결과였다. 이러한 지방제도 개정으로 만들어지는 극히 제한되고, 권한도 별로 없는 지방정치 공간은 민족운동세력의 지방정치 참여의 의미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일제하 민족주의세력의 상당수는 일본 중의원 보통선거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보통선거에서 식민지조선의 지배정책 변화를 주장하는 무산정당이 진출하여 대세를 이루면, 식민지 조선에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군부 및 특권세력이 약화될 것이고, 일본사회의 민주적 변화가 식민지 조선의 지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에서였다. 그렇지만 1930년 2월 중의원 제2차 보통선거의 결과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의회진출과 득표율도 변변치 못했지만, 더 큰 문제는 무산정당세력이 사분오열되어 이진투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일본사회의 민주적 변화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이런 상황은 1920년대 합법적 정치운동을 전개하던 좌우의 식민지 민족운동 세력에게 커다란 제약으로 다가왔다. 제2차 중의원 보통선거와 식민지 지방제도의 개정의 결과는 조선의회의 기대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식민지 조선에서 합법적 정치운동의 공간을 대단히 축소시켰고, 그 전망을 어둡게 하였다. 당시 민족운동세력들은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당시 동아일보계열의 동향이었다. 민족적 중심단체, 민족단일당 결성을 지향하는 합법적 정치운동론은 1926년에 이르러서는 민족주의 세력에게 일반화되기에 이르며, 1927년 신간회 창립으로 구체화되었다. 이런 논의를 주도해왔던 송진우를 중심으로 한 동아일보계열의 기본 입장은 광범한 대중을 민족운동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합법적 정치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민족운동의 정치조직은 일본에서의 무산정당이 의회에 진출하여 조선 정책이 바뀌어 질 때, 더 나아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크게 변동될 때를 대비하여 민중의 정치적 ‘자각’과 ‘민족적 훈련’을 담당하는 실력양성, 미래를 위한 준비 조직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그들은 합법적 영역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배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타협과 협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았다. 그들은 타협과 대결의 경계선을 걷고 있었다. 동아일보 주도세력은 일본 정계 변화 및 중국 국민혁명의 전개에 주목하면서 그 정세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운동 노선과 방향을 수정하여 갔다. 그들은 중의원 제2차 보통선거의 결과와 식민지 지방제도 2차 개정을 통해 조선에서 자치의회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판단했고, 합법적 정치 운동에서 사실상 후퇴했다.

반면에 천도교신파는 정세와 무관하게 자치운동을 전개했다. 1920년대 후반 천도교 신파는 구파에 비해 교세가 압도적으로 우세하였다. 신파와 청년

당 지도자들은 민족협동전선운동에 비판적이었고, 다른 사회세력과의 연대 보다는 자신들의 세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독자 활동에 주력했다. 그들에게 있어 신간회는 이념과 노선이 혼재되어 있는 조직이고, 자신들이 극복해야 할 경쟁대상이었을 뿐이었다. 신간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처음부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이런 사정이 1930년 2월, 신간회 중앙본부로부터 천도교 신파의 입회 권유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면서 반신간회 운동을 지속 전개한 주된 이유였다. 그들은 일본 정계의 동향이나 객관적 정세 변화와 크게 상관없이 자치제를 주장하며 이를 실현시키려 했다.

한편 1920년대 후반 들어 기독교세력들도 농촌부를 설치하는 등 민중에 대한 영향력 강화에 나섰다. 이는 사회주의세력의 반기독교운동에 대한 사회복음에 기반한 기독교계열의 대응과정이기도 했다. 기독교신우회는 전국 각지에 지회를 결성해 신간회에 상응하는 기독교계의 협동전선으로 구상되었지만, 실제로는 경성지회를 결성하는데 그쳤고, 실제 활동은 미미했다. 주요한 과 박희도 등 기독교계의 주요 인물도 신간회에서 활동을 하였고, 그 외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았다. 기독교신우회가 천도교 신파와 연결되어 자치운동을 추진하였다는 일제관헌 기록은 잘못된 것이다. 보다 두드러진 점은 1930년에서 1931년 신간회 해소기까지 기독교계의 사회운동과 민족운동 자체가 사회참여에 반대하는 기독교 보수 세력과의 갈등 속에 침체상태에 있었다는 점이다.

1930년 전후의 시기는 합법적 정치운동이 부각된 시기였다. 그렇다고 그것이 새로이 나타난 현상은 아니었고, 이미 1926년 후반부터 일반화되어 신간회 창립으로 구체화 되었던 현상의 연장선상이자 같은 흐름에 있는 것이었다. 민중대회사건으로 신간회 허헌 중앙집행부는 큰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중앙상무집행위원회는 건재했고, 김병로가 집행위원장 대리로서 중앙상무집행위원회 중심으로 운용했다. 1930년 11월에는 김병로 중앙집행부체제가 새롭게 구성되었다. 신간회 허헌 중앙집행부나 민중대회사건이후 구성된 김병로 중앙집행부나 그 인적 구성과 조직 성격에 큰 차이가 없었다. 민족주의자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지만, 일부 사회주의자들도 적극 참여했다. 그들 중

에는 좌익사민주의자라 불리는 인물들도 있었고, 당재건운동과 혁명적 농노조운동을 전개하던 인물들도 있었다. 이들 사회주의자들 사이에는 합법적 정치운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 민중대회사건이 일제의 강력한 탄압 때문에 부각되어서 그렇지 그 투쟁의 내용과 성격은 기존 신간회 일반적 투쟁과 활동의 범주 속에 있는 것이었다. 김병로 중앙집행부도 일제의 탄압이 전국적으로 가해지는 상황에서 수세적 위치에 있어서 그렇지, 그 활동내용에서 이전과 달라진바가 거의 없었다.

유일한 차이는 신간회 창립이전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왔던 부분, 즉 당시 민족주의세력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천도교 신파를 끌어들이는 보다 구체적 행동을 취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는 신간회 내 사회주의자들의 동의하에 추진된 것이었고, 김병로와 함께 협의 대표로 나섰던 채규항은 바로 그 당시에 지하에서 화요파 계열의 당재건운동을 지도하던 인물이었다. 그렇지만 이는 신간회와의 통합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대립적 구도를 갖고 있던 천도교 신파에 대한 오관이었고, 가능하지 않은 시도였다. 이런 시도에 대해 천도교 신파와 대립하고 있던 이종린 등 천도교 구파 일부와 그와 가까운 세력들이 강력 반발했고, 이들은 경성지회로 집결해 본부와 격렬히 대립했다. 신간회 해소문제는 당시 정세와 운동 상황에 대한 객관적 복원위에서 다시 정리될 필요가 있다. 이는 차후의 과제로 두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기독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삼천리』, 『별건곤』, 『혜성』.
- 京畿道警察部, 『治安狀況』, 박경식 편, 『朝鮮問題資料叢書』 6권, アジア問題研究所, 1982.
- 京城鐘路警察署長, 『自治運動速進會設立に關する件』, 1930. 1. 14, 京鐘警高秘 604호.
- 朝鮮總督府 警務局 編, 朴慶植 解説, 『朝鮮の治安狀況: 昭和5年版』, 不二出版, 1984.
- _____, 『最近における朝鮮治安狀況 - 昭和 8・13년』, 巖南堂書店, 1966.
- 김동명, 『지배와 저항, 그리고 협력 - 식민지 조선에서의 일본제국주의와 조선인의 정치운동 -』, 경인문화사, 2006.
- 김정인, 『천도교 근대 민족운동 연구』, 한울아카데미, 2009.
- 동아일보사, 『동아일보사사』 1권, 동아일보사, 1975.
- 박찬승, 『한국근대 정치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1992.
- 성주현, 『근대 청년년과 신문화운동』, 모시는 사람들, 2019.
- 손정목, 『한국지방제도 · 자치사연구: 갑오경장~일제강점기』 상, 일지사, 1992.
- 이균영, 『신간회연구』, 역사비평사, 1993.
- 장규식, 『일제하 한국 기독교민족주의 연구』, 해안, 2001.
- 조규태, 『천도교의 문화운동론과 문화운동』, 국학자료원, 2006.
- 최규진, 『조선공산당 재건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岡本眞紀子, 『植民地官僚の政治史 - 朝鮮・臺灣總督府と帝國日本 -』, 三元社, 2008.
- 松田利彦, 『日本の朝鮮・臺灣支配と植民地官僚』, 思文閣出版, 2009.
- 李炯植, 『朝鮮總督府官僚の統治構想』, 吉川弘文館, 2013.
- 김형국, 『1929~1931년 사회운동론의 변화와 민족협동전선론』, 『국사관논총』 89, 2000.
- 성주현, 『1920년대 천도교의 협동전선론과 신간회 참여와 활동』, 『동학학보』 9권 2호, 2005.
- 윤덕영, 『신간회 창립과 합법적 정치운동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5, 2010.
- _____, 『1930년 전후 조선총독부 자치정책의 한계와 동아일보계열의 비판』, 『대동문화연구』 73, 2011.
- _____, 『신간회 창립 주도세력과 민족주의 세력의 정치 지형』,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8, 2011.
- _____, 『신간회 초기 민족언론 세력의 정세인식 변화와 '민족적 총역량 집중'론의 성격』, 『신간회와 신간회운동의 재조명』, 선인, 2018.
- 윤효정, 『신간회운동연구』, 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7.
- _____, 『복대표대회 전후 신간회 본부의 재편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3, 2018.
- 이수일, 『1920년대 중후반 조병옥의 민족운동과 현실인식』, 『실학사상연구』 15, 2000.
- 이애숙, 『1930년대 초 청년운동의 동향과 조선청년총동맹의 해소』, 한국역사연구회 근현대청년운동사 연구반 지음, 『한국근현대청년운동사』, 풀빛, 1995.
- 이태훈, 『1930년대 일제의 지배정책 변화와 친일정치운동의 '제도적' 편입과정』, 『한국근현대사연구』 58, 2011.
- 이현주, 『일제하 (수양)동우회의 민족운동론과 신간회』, 『한국학(구 정선문화연구)』 92, 2003,

정용서, 『일제하 천도교청년당의 운동노선과 정치사상』, 『한국사연구』 105, 1999.

허영란, 『일제시기 읍·면협의회와 지역정치 - 1931년 읍·면제 실시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31, 2014.

The decline of the Lawful Political Movement around 1930 and the trend of nationalist forces surrounding Singanhoe

Yoon, Duk-young*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hat, first, the compromising Self-governing movement connected to Linchoi's Cheondo-gyo sect around 1930 was a national movement that included the leadership of Singanhoe as well as nationalist forces such as Suyang donguhoe, Gidoksinuhoe, and Dong-A ilbo. Second, I would like to examine the changes in the situation in Japan and colonial Joseon around 1930, focusing on the second common election of the Japanese Imperial Council and the second revision of the local system of colonial Joseon. Third, it is to explain the actual trends and activities of nationalist forces such as Cheondo-gyo, Christian, and Dong-Ailbo, and the organizational reality and nature of the organization of the Singanhoe Kim Byeong-ro Central Executive.

The Dong-A ilbo group, who led the Lawful Political Movement in the 1920s, judged that self-government became impossible in Joseon, and virtually retreated from the Lawful Political Movement. On the other hand, the Cheondo-gyo new faction, which had the most powerful organizational power within the nationalist force, conducted a self-governing movement regardless of the political situation. The main characters of Gidoksinuhoe were active in Singanhoe, and they did not promote the Self-governing movement in

*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Senior Research Fellow

connection with the Cheondo-gyo new sect. The Singanhoe Kim Byeong-ro Central Executive Department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from the previous Central Executive Department in its personnel composition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While the nationalists took the initiative, various socialists took part. There was a consensus among them about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the Lawful Political Movement.

Key words: Lawful Political Movement, Self-governing movement, Popular suffrage, Singanhoe, Gidoksinuhoe, Dong-A ilbo, Cheondo-gyo, Kim Byeong-ro(金炳魯), Park Hui-do(朴熙道) Song Chin-woo(宋鎭禹), Lin Choi(崔麟)